

#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 인터뷰집을 펴내며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공개 시점도 늦고, 공개하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이 중대재해 기업을 감시할 수 있고, 또 기업 역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워크넷의 구인공고와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중대재해 기업을 검색하고, 또 새로 구인공고가 올라오는 사업체에 어떤 중대재해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지 기업의 이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직장의 안전보건 정보, 위험물질 정보, 산재 인정 기준, 재해의 원인과 결과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산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산업재해 영역 전반에서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만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듣고 기록하기 위해 ‘산업재해와 알권리’를 주제로 한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활동가, 연구자, 노무사, 기자, 유가족 등 다양한 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토대로 향후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들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산업재해의 입증 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는 법적 구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재해자 지원에 소극적인 공단, 고용노동부의 행정력 부족 등에서부터 알권리의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모아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흔쾌히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신 10명의 인터뷰 대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도 역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 차례 •

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 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전주희 연구원

지역사회가 산업단지의 안전에 대해 알고, 개입할 수 있어야 | 18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장종익 사무국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알권리 | 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교수

보는 것은 되지만, 받는 것은 안되는 안전보건자료 | 42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

ESG 평가의 관점에서 본 산업재해 정보공개 | 54

ESG 평가기관 유○○ 연구원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알권리는 없다 | 6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 노무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서사가 필요하다 | 78

한겨레21 신다운 기자

재해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 96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권동희 노무사

유족에게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 나라 | 114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 2022.05.03

# 동일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손진우 상임활동가, 전주희 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정진임 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20년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노동안전보건 단체다. 손진우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후 동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는 ‘중대재해 대응매뉴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을 만들었다. 전주희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하여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밝힌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I’를 만들었다.  
.....

## 산재 정보의 중층적 단절

김예찬 |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서 올 해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작년에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 백서도 발간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자료를 모으고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런 알권리 문제에 대해서 느끼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전주희 | 산업재해와 관련한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일단 기업과 기업 간에 단절이 있어요. 기업끼리도 서로 마치 기업 비밀처럼 서로 은폐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하고 노동자 사이에 단절되는게 있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사이에 단절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원청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정보의 단절이 있다거나, 하청끼리도 하청 업체가 서로 달라서 노조가 있어도 정보 공유가 안된다거나. 이런 중층적 단절이 있고요.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회사 측으로부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그걸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자료로만 쌓여있지, 조합원이 직접 간부가 되지 않고서는 그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데이터를 좀 통일된 틀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전에 경향신문(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서 한번 빵 터트렸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스스로 해서 여러 정당이나 언론에서도 유사한 콘텐츠가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일단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여기저기 중구난방 되어 있어서 품은 품대로 들고,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지도 않는 문제가 있어요.

구의역 참사 보고서나 김용균 보고서, 삼성 크레인 사고 국민참여 보고서 같은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들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까지 규명한 보고서인거죠. 이정도 수준에서 보고서가 나와야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는 단신에 그치지 말고 사고가 처음 났을 때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어땠고, 사측은 뭘 했고, 장례는 어떻게 치렀고, 그리고 재판까지 갔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다는, 그런 하나의 완결된 자료를 구축을 해야한다는거죠. 그리고 시계열로, 유형별로 사고를 분류를 해서 용접 중에 일어난 사고라든지, 지게차 사고라든지, 혼자 작업하다 떨어진 사고라든지, 2인 1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던지 하는 식으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들어야죠. 이런 자료를 엑셀로 통일된 틀로 정리를 하면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나면, 현대제철에서 예전에 유사한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만약 그 사고가 pot 도금공정이다, 그러면 다른 제철 사업장에서 도금공정과 관련된 사고는 뭐가 있었고, 그때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어땠고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런걸 쪽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으면 언론에서도 단편적인 사고 소식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낼 수 있고, 연구자들도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거예요.

저는 연구자로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건데, 문제는 민주노총도 여력이 없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자료 축적하는 작업은 늘 두번째로 밀리는 일이잖아요. 활동가들에게는 당장의 사고 대응이 중요하고, 연구자들도 당면한 자기 연구가 중요하고. 기존에 축적된 자료로 연구를 하지,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그 부분이 비어있게 되는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려면 최대한 많은 자료를,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거죠.

###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조사의 교훈

전주희 | 작년에 저희가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사고 조사를 했는데 울산저널에서 저희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카이브를 만들었어요. (울산저널 아카이브) 저희가 먼저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자료를 파일 채로 받아서 분류를 했고, 1974년부터 사고 유형별로 색깔별로 사고 사망 내역을 정리한거죠. 90년대 이전 사고에 대한 자료들은 없는데, 1987년에 노조 만들어지고 나서 노보에 실린 사고들의 통계만 뽑아서 넣은거구요. 이런 아카이브의 분류 체계를 저희가 짰거든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걸 아카이브로 구현한거예요. 일반적인 사고 내용 뿐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고조사 보고서 정리한 것도 같이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자 정보, 사고로부터의 교훈, 재판 여부나 재판 결과,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기술적 원인과 관리적 원인, 제도적 원인을 나누어 놓았어요. 2인 1조 작업인데 단독 작업을 수행했다거나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작성한 자료, 사측이 작성한 자료,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자료, 재판 결과 등의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재구성하려고 한 거죠.

작년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35건의 사고에 대해서 관리 상 원인, 이를테면 신호수를 미배치 했다거나, 그렇다면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런 회의 결과를 냈다. 그 다음 노동조합은 이런 대응을 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검토 의견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따로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거나, 이런 의견들을 넣고, 참고자료로 사고 조사보고서, 재해 조사의견서, 판결문 번호 같은걸 넣은거죠. 여기서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게 판결문이에요.

김예찬 | 판결문 정보를 전부 링크를 걸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판결문은 일일이 찾으신건가요?

전주희 |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조가 가지고 있는 것 일부, 노동건강연대가 받은 일부랑 저희가 검색해서 찾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에 일어난 현대제철 사고에 대한 판결문을 보고 싶다, 이러면 사건들이 병합되어 있어서 여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찾을 수 있죠.

김예찬 | 저희도 좀 찾아보니까 건설 사고 같은 경우는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라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시스템에 공개를 하더라구요.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왜 건설사고는 이걸 하는데 다른 사고는 안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주희 | 예전에 삼성크레인 사고가 나서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권고안 중에 하나가 조선업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선업 업종끼리라도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라, 정보공개 해서 사고 원인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단속도 하라고 했는데 안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하고 나서 경총에서 일종의 자동차위원회, 조선소위원회 같은걸 만들었더라고 하더라구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 말로는 이제 모여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거고. 그럼 그걸 이제 공개하게끔 해야 하는데, 예전에 현대중공업 백서 만들 때에도 너무 답답해서 제가 현대중공업 찾아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자료만 달라고. 맨날 노동조합에서만 이런걸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좀 해야하는거 아니냐.

김예찬 |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전주희 | 되게 놀라던데요? 이런 자료는 다 어디서 보는거냐. 사실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기록을 모아서 역사책을 하나 만든다, 이런 인식을 하는거예요. 근데 사실 당장의 사고 사례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아무리 새로운 사고가 등장해도, 과거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쭉 모아서, 유사 동종 사례를 묶어서 분석을 하면 어떻게 수사, 조사를 해야하나, 과거에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최신 자료가 아니라 과거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접근해야죠.

### 위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진임 | 저희도 중대재해 사고 DB 만들고, 그걸 구인구직 정보하고 연계해서 공개할 생각인데, 그런데 그런 고민이 드는거예요. 이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쓸모 있을까. 어쩌면 사고가 일어나는 기업에 대해 이상한 낙인 효과가 생길수가 있기도 하고.

손진우 | 지역에서 구직, 취업 안내하는 선생님들에게 되게 중요하죠. 구직자 당사자 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월급 얼마나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을텐데. 지금 그런걸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전주희 | 일단 DB만 잘 구축이 되면 현장의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 현장 관리자나 안전 관리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구요. 구직자들에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김용균씨 사고 나서 동료 노동자들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다 입사한지 6개월, 7개월 된 분들 있었는데 자기들은 하청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근무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두 달 동안은 울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건 필요한 것 같아요. 낙인 효과라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그런데 유효 기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번 발생한 사고까지 공개를 한다 이런 건 좀.

김예찬 | 저희도 그게 고민이에요. 한 5년으로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건 정부가 애초에 공개를 잘 하는건데. 저희가 OSHA(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보니까 사고 내역을 엄청 잘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사고 형태별로, 개인별로 데이터로 받을 수도 있고.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4만 달러 이상 벌금이 나온건 다 찾아볼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걸 해보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보공개로 데이터 형태로 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해라, 이 주장을 하고 싶은거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공개를 하면 좋을텐데.

손진우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후퇴 시킨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후퇴시킨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속보 같은 것도 이제는 기업들이 내리게 해요.

롯데에서도 사고 나니까 전화해서 속보 내려라, 그리고. 중대재해 속보도 아예 기업명을 빼고 지역만 대충 표시하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대재해 소식은 사실 언론이 제일 빨리 알거나, 아니면 소방 쪽이 제일 빨리 알거든요. 언론사들이 정보를 어떻게 접하냐면, 소방서에서 지역에 연락하는 카톡방에 기자들이 다 있는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화재가 났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카톡방에 속보를 뿌려주는거죠. 고용노동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소방서는 응급출동 연락을 받으니까.

저희 단체에서도 중대재해 사고 관련해서 대응할 때 우선 응급출동 상황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구조 중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의료 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산업재해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가 구급차 부터 부른게 아니라 회사에 보고 부터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정보도 응급출동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거죠. 구급차를 언제 불렀는지, 회사에는 언제 전화했는지.

###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정진임 | 정보공개에 우선 순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판결문 공개도 너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전주희 | 판결문 공개도 너무 중요한데, 이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

긴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재해조사 의견서라도, 그것만이라도 공개를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동조합에서 조사하거나 주장하는 자료들도 의견서랑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객관화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손진우 | 저희가 최근에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직자 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험과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재해 조사 내용, 특히 중대재해 조사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재해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현장에서 이걸 바꾸려면, 과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 자체를 알 수 없는거죠. 수사 자료라는 이름으로 아예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분인 사측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 피의자니까 변호사 대동해서 조사에 참관하고, 조사 내용도 살펴본다는거죠. 정말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유족들은 배제 되고, 현장의 노동자, 노동조합도 다 배제되고, 그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데 사측은 변론권이 있으니까 조사에 끼워주고. 이게 말이 안되는 과정인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조사 결과가 부실한 것도 문제구요.

과거의 사고 자료부터 꼭 추적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도대체 옛날에 사고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는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한다는거죠. 만약 동네에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은 뭐였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어떤 위험 물질들이 있는지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이런 개입이 가능한거잖아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명단도 못주겠다, 조사 내용도 못주겠다 이러니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조사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재해조사를 하는 조사관들이 보통 근로감독관인데, 근로감독관 수 자체가 적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쓰는게 안전보건공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보건공단 사람이 작

성한 자료를 수사 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재가공해서, 검찰에 기소 자료를 넘기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는거예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부실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인거죠. 지금 중대재해 전담반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조사 과정이나 내용을 통으로 감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거예요. 그래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게 중요한 것이고, 또 현장에서 위험을 통제해야 할 주체인 노동자들, 노동조합에게도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요.

전주희 | ‘다시는’(산재가족피해네트워크)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눈물 나죠. 사실 김용균씨 어머니도 사고 관련 CCTV 영상 자료를 본인이 받지 못해서 의원실을 통해 받았고. 말도 안되는 일인데.

김예찬 | 그래도 김용균씨 사고나 구의역 사고 같은 경우 사회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조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었던거죠?

손진우 |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업이, 일반적인 재해 조사 의견서의 내용이랑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조사한 내용하고 비교하면 질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느냐, 이런 이슈페이퍼를 내려고 작년부터 세미나도 하고 했던거죠.

###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장

정진임 | 여러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활동의 영역이 비슷하면 서도 각자 또 다르다보니까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 그 정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그 상이 조금씩 다 다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좀 정리해보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이 노동자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알권리의 내용이나 그걸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손진우 | 이를테면 유해물질과 관련한 정보는 세상에 알려지면 알려질 수록 좋은거죠. 반올림 활동도 같이 했는데, 반올림에서 얘기하는건 MSDS에 대한 얘기나 작업환경 측정 보



고서를 공개해라 같은 거잖아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동지들하고 함께 활동하는데, 거기서 쟁점은 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냐, 위험성평가 자료를 공개 안하냐 이런거예요. 해당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조사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정작 직접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 안하는 거예요. 반올림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활동을 하니까 작업환경측정보고서, MSDS, 화학물질 유통량, 공정에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거고.

**김예찬** |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자료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안주는건가요?

**손진우** | 고용노동부가 그 자료를 제대로 접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노동자들이 골병이 드니까, 그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사실 업무상 질병의 70% 가까이가 골병이에요. 근데도 그 데이터를 관리 안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공개해야 할건 천지뼉까지요. 사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결과, 논의 내용도 세상에 공개해야죠. 지금 노동조합하고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하는데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산재 신청에 대해서 승인, 불승인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자료가 있어요. 그걸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축적합시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는 사실 전부 공개해야 하는거죠. 유해 요인, 위험,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건데, 문제는 정부든 기업이든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게 없다는거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최근 금속노조가 제1노조가 되었거든요. 얼마전까지 2노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자료도 안주는거예요. 작업 환경 측정 자료도 계속 싸우고 난리를 치니까 열람만 하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간부들한테 다 가서 필사하라고, 필사해 오는 싸움을 합시다 그랬어요. 환경안전팀에 자료가 있다는데, 그 자료를 안주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10분씩 필사를 하자.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 대표가 아닌 노동조합한테는 아무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거죠.

**김예찬** |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고, 복사가 안된다고 하면...

**손진우** | 예전에 삼성이 작업환경 측정을 굉장히 이상한 청부 업체(인바이런, 필립모리스의 편에서 담배와 폐암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에 맞서 고엽제 회사를 옹호했던 곳)를 통해서 하고 언론에 자료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를 영어로만 발표했거든요. 굉장히 추잡하게 발표한거죠. 그래서 반올림이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열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한 시간만 열람할 수 있다, 불펜이고 수첩이고 못 가져 간다 그러더라구요.

**전주희** | 뭐 저는 위험성평가 자료는 그냥 기업하고 노동자들하고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걸 사회적으로 다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기업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재 자료도 모든게 다 공개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건 꼭 필요한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쓰면 되는거고. 근데 산재 중에서도 중대재해,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산재와 다르게 일종의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보다 중요하게 정부에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게 만들 것인가.

**손진우** | 저희도 그 얘기를 해요. 정부가 자료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야 하고, 그걸 나중에 연구자나 정책개발자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그거 자체를 안하고 있는거죠. 그 자체가 너무 문제인거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자료를 모으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1차적 데이터를 축적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사실 제일 편한건 고용노동부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건데.

**전주희** | 그래서 올 초에 중대재해 네트워크 해산하고 나서 상설기구를 만든다, 그럴 때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단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단 상임 역량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고. 두번째로는 폴더를 만들어서 기존에 모은 자료를 다 정리해보자, DB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게 현대제철에서 사고 났던 것. 그나마 하청 노조가 있어서 내부 자료가 있으니까, 현대제철 사건을 집중적으로, 한 10년치 자료를 가지고 사망 사고 사례를 살펴보자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그런게 가능한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정규직이나 하청이냐에 따라서 좀 관심이 달라지고.

## 알권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손진우 | 노동조합들도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곳도 있어요. 특히 알권리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다른데, 일단 현재 노동자의 알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얘기되고 있어요. 안전보건교육 조차 제대로 안되니까, 노동자의 알권리를 정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 수준으로 접근되는게 있고. 또 어떤 물질이 위험한지 알아야 하니까 MSDS 달라고 하세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하고 알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노동조합에서도 이제서야 그런 작업을 해야한다는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보통 유족이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랑 협상하고, 장례처리절차와 과정을 정리하는 것 정도였던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 문제로 왜 싸워야 하는지 잘 몰랐던게 현실이구요. 저희가 2020년에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4월 되어서야 중대재해 대응 지침이 나왔어요.

전주희 | 금속노조가 최근 몇년 간 뭘 했냐면,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단위마다 사고 조사해서 보고서 써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금속노조 노안실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 조선소에서 사고가 나면 조선업 노안 담당자를 공장에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사고 조사를 하는거죠. 이제는 첫 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을 해당 사업장의 노안실에서 현장 가고, 녹취 따고, 증거 취합하고, 병원 가고 이렇게 하고, 한 2~3일 뒤에, 만약 현대중공업이었다고 하면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노안 담당자 회의를 해서 사후 분석을 쪽 하고. 아예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보도자료로 뿌리고 공개하거든요. 그 자료를 몇년 치만 봐도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어요.

손진우 | 원래 금속노조에서도 각 지부나 지회가 역할을 담당했는데, 지침을 세워서 무조건 중대재해 발생하면 전국 지부의 노안 담당자 총결집, 이렇게 된지 2~3년 됐어요. 그게 지금 축적이 되고 있고.

김예찬 | 사실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건설업이잖아요. 혹시 건설노조 쪽도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손진우 | 건설노조는 노안실을 올해부터 구성했어요.

전주희 | 그 전까지 사고가 나면 보상 중심으로 협상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손진우 | 건설 같은 경우 내부에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토목보조, 이런 식으로 분과가 있고 분과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지역 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랐어요. 그래도 최근에, 작년부터 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면서 노안실이 구성된 거라서, 이제 중대재해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

# 지역사회가 산업단지의 안전에 대해 알고, 개입할 수 있어야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 장종익 사무국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중대재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노후산단의 낡은 설비다. 특히 대형 산단은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 오염 등의 위험으로 지역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연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여러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여수산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지역에서 오랜 기간 노동안전을 위해 활동한 장종익 사무국장을 만났다.  
.....

**김예찬** | 저희가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활동가와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거든요.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장종익** | 저는 민주노총 전남본부에서 15년 상근 활동을 했고, 이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여수시·여수산단 공동 발전협의회를 거쳐 지금은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으로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원과 전남 유해물질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라는 안전보건단체의 집행위원장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김예찬** |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여수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2~3년 전에 여수의 한 제조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청소를 하다가, 산업용 로봇팔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나중에 구인구직사이트를 찾아보다가 그 공장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걸 봤는데, 이 청소 업무가 굉장히 쉬운 일이다, 별로 준비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나 지원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사람이 죽어나간 산업장인데,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거죠.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것이거든요. 시민과 구직자들에게 어떤 기업에, 무슨 사고들이 있었는지 정보를 알려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노동안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영세사업장들은 안전관리에 투자할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대기업은 투자를 해서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영세사업장은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업체들은 사고 내역이 공개가 되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거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종익** | 낙인효과가 있죠. 그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 나중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공개를 할 수 있을거구요. 너무 막무가내로 먼저 모두 공개해라, 이러면 오히려 사업주의 반발을 사서, 산재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구요.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안전 보건 문제에 신경 쓰는 기업에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지역 사회가 힘을 실어주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예찬** |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에 더 신경 써야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종익** | 요즘엔 안전보건영역도 전체 생산과정중 하나라는 인식이 잡혀가고 있는거 같아요

다행이라고 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발주한 공사 등은 선 안전조치 후시공이 아닌 경우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사업장의 경우 처벌보다, 먼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여수 국가산단에서 협력업체들의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협력업체 보다는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도 원청에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봐요. 어차피 원청의 공장 내에 입주하는 형식이니까.

이제는 하청업체가 스스로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원청 공장의 시설을 그대로, 정규직들이 하던 일을 하청에 아웃소싱해서 하는거예요. 특히 생산 공정의 맨 마지막인 포장이나 출하 같은 부분. 다 아웃소싱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직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게 아니니까, 안전보건 관련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이는거죠. 사실 정규직들이 힘들고 귀찮은 일을 잘 안하려고 하니까 고충처리 차원에서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안전 설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형태고, 결국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또 지역 산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곳은 사람이 많아야 50명, 보통 20~30명 수준인데 이런 곳은 정부나 지자체들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단지를 만들어나갈 때부터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곳들은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설비 개선을 할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농공단지를 짓는다, 하면 공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인원은 이 정도니까,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몇 명 정도 필요할지 계산해서 농공단지 협의회 내에 안전 관리 센터를 두고, 작업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나갈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영세 사업장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거구요.

**김예찬** |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노후산단특별법 제정 운동도 하더라구요. 오래된 산단의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해 기업에만 맡길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서 감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

**장종익** |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동

차로 비유하자면,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여러 안전장치나 CO2 저감 장치 같은게 부착되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오래된 자동차들은 지금 개조해서 장치를 하고 싶어도 이미 구조가 다르니까 어려운거죠. 그것처럼 오래된 노후 산단들은 이미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자동차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어느 정도 타면 엔진오일도 갈고, 브레이크도 갈고, 벨트도 갈고, 자동차 수명을 계산해서 보수를 하잖아요. 기업도 당연히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점검을 하는게 비용이 저렴하니까 점검을 열심히 하죠. 특히 데미지가 많이 가거나, 폭발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거예요. 위험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점검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신경을 덜 쓴다는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상존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압력. 위험물질이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어도, 압력이 세지 않으면 누출되거나 하는 피해가 없으니까 유지보수 목록에서 빠지는거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자연 상태에만 있었어도 용기에 소소한 데미지가 누적되는거거든요. 그게 임계점에 다다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건데,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거죠.

국가산단의 사고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실수,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기는 사고도 있지만, 산단이 노후하다 보면 도저히 더이상 신경을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지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장 문 닫아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요.

국가산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건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와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전 설비 부실 이런 문제를 많이 숨겼거든요. 근데 이게 더이상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공장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추천 위원, 지역 주민 추천 위원, 기업 측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점검을 한다던가 방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김예찬** | 저도 좀 궁금했던게 지역 사회의 반응인데, 여수산단에 사고나 화재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면 저 동네에 사는 분들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지

역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구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있는건가요?

**장종익** |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 회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사고가 일어나도 환경부가 관리하는 범위가 아니면 알 권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빠티는 부분도 있고.

**김예찬** | 그 얘기는 환경부 소관인 유해 화학물질 누출, 이런 사고가 아니라면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안된다는거죠?

**장종익** | 맞아요. 유해 화학물질, 독성물질 사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지자체나 노동부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옛그제도 배관 라인을 프레싱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배관 라인에 화학물질이 안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그냥 화재 폭발이기 때문에 환경부 쪽 일이 아닌거고. 지자체 산단 관리 사업소 담당이 아니라 노동부 쪽 문제 아니냐, 아니다, 소방서 쪽 일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거죠.

### 하청노동자는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들

**장종익** | 알권리 관련해서도 이미 정규직들의 경우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MSDS 부터 해서 비치도 되고, 의무 교육도 하고. 그런데 협력업체들은 사정이 다르죠. TA라던가 셋다운 같은 돌발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점검을 위해서 공장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은 비정규직, 아니 비정규직도 아니고 플랜트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하게 되는거구요.

이분들이 라인도 바꾸고, 프레싱 밸브 채우고, 잠그고, 절단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럼 기존에 이 라인에서 썼던 물질이 만약에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쳐봐요. 백혈병을 일으킬수도 있어.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플랜트 노동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단 내 일반적인 문제를 중점으로 교육이수를 하다

보니, 정작 사업장마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교육을 플랜트 건설 노동자도 받긴 할텐데, 아무 의미없이 받는거예요. 왜? 매일 매일 가게 되는 공장이 다르고 현장이 다르니까. 오늘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공지를 받고,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장 출입을 하려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니 받는다 이런거죠. 제가 이제까지 그런 교육을 수십 번 받은 분한테 가서 “○○화학 ○○공장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오늘 공장에서 취급하는 1,3-부타디엔은 특정대기 유해화학물질로 흡입 시 졸음, 구토, 의식불명이 올 수 있다, 액체상태로 접촉 시 동상에 걸릴 수도 있다, 2급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치와 더불어 무조건 안전 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못하고 있는거죠.

**김예찬** |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거죠?

**장종익** | 현장감이 없는거예요. A 업체에 일을 하기 위해서 A 업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그냥 밖의 민간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가지고 A 업체로 들어가는거지. 물론 공장에서도 아예 설명을 안하는건 아니지만, 현장의 상황이 워낙 돌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일을 하다가 내일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매일 매일의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처음에 한번 모아놓고 공지하고 끝인거지.

지금 같은 여름에는 안전 장구 착용이 허술해질 수 밖에 없어요. 더우니까. 그래도 여기는 가스가 노출 될 수 있는 사업장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신경을 쓸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가 그 부분까지 알지 못하죠. 자기도 처음 오는 곳인데.

**김예찬** | 결국 원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거죠?

**장종익** | 네, 압력 용기의 밀폐 작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를 청소한다, 그러면 산소를 집어 넣어서 가스를 빼겠죠? 그리고 용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시키는건데, 남아 있는 가스 때문에 질식하는 경우가 생기는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산소 농도를 꼭 측정해야 한다고 일하는 분들에게 얘기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다 설명을 안하는거지. 사고 나서 가보면, 산소 농도 측정을 하고 작업 하러 들어 갔는데 뭔가 냄새가 났다. 이게 가스 문제라는걸 알면, 냄새가 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재측정을 요청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알려주니까 그냥 냄새가 원래 나는가 보다, 그러고 일하다가 쓰러진 분도 있구요. 산소 농도 측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왜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거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공장에 산소 라인도 있고, 질소 라인도 있는데, 지금은 밸브 모양을 달리 해서 서로 구분이 가게 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산소를 연결해야 하는데 질소를 연결해서 질식해서 죽는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업할 때 뿌영고 시야가 안좋아서 이걸 햇갈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말이에요. 요즘은 안전보건단체들이 밸브 모양과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삼각형, 사각형으로 모양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안전보건단체들이 업체별로 독성물질, 유해물질 뭘 취급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자료 정리해서 공개하는게 있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죠. 지금도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건 있지만, 이게 지역별로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거예요.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들, ○○화학은 5개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뭘 취급하고 저 공장은 이걸 취급한다, 이런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게 필요하죠. 취업할 때도 노동자들이 이 업체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이런걸 볼 수 있어야 하구요.

**김예찬** | 저희도 기업의 정보,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게 문제의식이거든요.

**장종익** | 암모니아 생산 공장이나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질산화수소로 분리하는 업체, 이런 곳은 원래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암모니아를 어떻게 밀폐하고 있고 농도는 어떻게, 이런걸 오히려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불안해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미리 겁내는 것도 있잖아요.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 굴뚝에서 올라온 연기보면서 위험한 물질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굴뚝 연기 98%는 그냥 쿨링타워에서 나오는 수증기에 가까워요. 최대한 강한 불로 태워야 환경 오염 물질이 더 배출되니까, 온도가 높다보니 수증기와 결합되어서 연기가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장을 돌리면서 이 연기가 어떤 연기다, 이런걸 설명해줘야죠. 미리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줘야 불안감도 덜 수 있고. 이런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시민이나 노동자들만 유리하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덜 수 있으니 상생할 수 있구요.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김예찬** | 제가 또 궁금한게, 예전에 구미에서 불산 가스 누출 때문에 피해도 크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대피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여수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재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장종익** | 일단 매뉴얼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에 실제로 적용되는건 다른 문제인 거 같아요. 만약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뿌린다거나, 이장단들에게 연락해서 이장들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장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하다고 봐요. 시에서도 동장, 이장들과 회의를 하지만, 안전 보건 관련한 부분은 좀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구요.

**김예찬** |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동네에 이런 위험한 물질을 쓰는 공장이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장종익** | 여수는 이미 산단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기업들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안한건 아니라서 그렇진 않을거예요. 다만 이 물질 정말 위험하니까 주민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을 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지자체가 못하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안전보건단체에게 위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지역 주민들도 무조건 산단을 배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점차 정보가 공개가 되고 전문가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거구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서 수습에 정신없는 기업에게 그냥 똥물을 끼얹어버리는게 문제의 해결책은 아닌거 같아요.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거나, 이행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건가가 중요하지.

**김예찬** | 어차피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장종익** | 그렇죠. 공장을 옮길 수도 없는거고. 기업도 바뀌어야죠. 지금은 그냥 누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해 하는건데,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공장 안에 자주 들어오게 해야 하고. 그 가교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권한도 부족하고 시민사회와 가교 역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예찬** |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지역의 노동청들이 그런 안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워낙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장종익** | 그렇죠. 근로감독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 많이 해서 지금은 그나마 좀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자주 나타나는 감독관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안전 보건단체들에 현장 점검도 한다거나 하는 권한을 주면 좋을 것 같고.

**김예찬** |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자체에 어느 정도 이관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노동청 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자임하고, 거기에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결합을 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장종익** | 그런건 바람직하죠. 사실 독성물질,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광역 차원에서는 좀 권한이 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별 권한이 없어요. 사실 주민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도 일정 정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협의회든 센터든 거기서 지역사회 추천 전문가,

노동계 추천 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옛날에 제가 민주노총에 있을 때, 원전 안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원전은 원전법에 의해 관리가 되니까, 국가 기밀 시설이라는거죠. 광주노동청 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못들어가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거죠. 산단도 1급 보안시설이라면서, 시민사회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근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 조사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죠.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뭔지 점검을 해서 고쳤다고 발표는 하는데, 사실 누군가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봐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여수 국가산단은 노동단체를 비롯 시민사회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민간 참여 조사가 가능하도록 공장에서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고 이후 노동,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재발 방지 대책이후 점검도 들어가고 잘 하고 있으면 칭찬도 필요하죠.

**김예찬** | 여수에서 최근에 현장실습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장종익** | 그 부분은 국가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좀 해양 레포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일을 했던건데요, 그런데 학생에게 시키면 안되는 일을 시킨거예요. 기본을 지키지 못한 거죠. 전문 자격을 가진 수중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을 현장실습생에게 시킨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예요.

작은 사업장들에 안전에 대한 만성적인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거죠. 저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노동 교육을 하는데, 예전에는 근로감독관 부르고, 강당에 학생들 다 모아서 했거든요. 근데 요새 전남 지역에서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 실습생 나가기 전에 2~3학년들 대상으로 교실마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당사자들의 논의가 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청소년들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막아버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남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전에는 취업 몇 프로 이렇게 주요 슬로건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거죠. 취업을 시킨다기 보다는, 학생이 하고 싶어하

는 직업들에 대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청소년들 만나서 산재 상담도 하고, 최저임금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공무원이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아요. 만약 지자체에 좀 더 권한을 준다거나, 지역의 노동단체들에게 그런 사업을 지원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노동조합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어요.

### 산업재해의 패러다임 바꾸기

**김예찬** | 지금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도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좀 궁금했던게,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 질병 산재 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유해 화학물질과의 인과성 입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장종익** | 어렵죠. 저는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아니라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질환은 무조건 산재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봐요. 유전적으로 대머리가 되는건 어쩔 수 없지만,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병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 또 백혈병 같은 경우, 부모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아이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 입증하는 현상황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봐요. 사실 산재 피해자들이 정보 접근 자체가 안되는데.

저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인과성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를 정하는 걸로. 예를 들어 화학물질 쓰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 생겼다, 이러면 담배 피워서 생긴거 아니냐 이런 반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아예 안쓰면 모를까, 폐암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물질을 쓰는 공장에서 폐암이 생기면 무조건 인과성 있다고 봐야해요.

**김예찬** | 흥미로운 주장인거 같아요. 기업들이 산재 인정을 잘 안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낙인 효과도 있는건데. 오히려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버고,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는 식으로 가면 기업들이 은폐하고 그럴 이유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도 드네요.

**장종익** |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생활비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완전 일반화하는거죠. 그 어떤 형태로든 일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노동력을 상실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인정을 해준다. 그게 어려우면 생활비 지원 제도라도 만든다. 사실 질환과 관련해서는 인과성 입증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이것 재해자에게 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여차피 이게 보험인데, 보험 담게 다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또 지금 산재 관련해서 여러 페널티가 있는데, 산재가 많이 일어난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배제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산재 은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업이 산재 인정을 안하려고 하나, 이런 페널티 때문인거죠. 오히려 산재 인정을 폭넓게 하고, 설비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장종익** |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산단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고, 또 국가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주잖아요. 그럼 그 세금이 어디서 가냐, 그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국가산단 내에서 일어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기는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 국가산단에서 생기는 세금 수익은 국가가 가져가니까.

**김예찬** | 여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네요.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세금은 중앙이 가져가고.

**장종익** | 기업도 마찬가지로요. 자기들은 충분히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추가적인 지출들이 생기는거니까. 만약 산단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상수원 인근 지역들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요. 원전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국가산단도 통으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울산, 마산, 여수, 포항, 광양 이런 곳이잖아요. 서로 성격에 따라 질환이 다르게 나오고. 그런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질병이 생겨도 인과성 입증도 어렵잖아요. 이런걸 책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산단 특별법 만들어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정부의 중화학 육성정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과 알권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최정학 교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의 내용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법을 통해 지난 20년 간 시행되었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보다 공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를 확대한 이 조항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법학자인 최정학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예찬** | 교수님은 노동법 쪽이 아니라 형법 전공이시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형사적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시게 된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정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자로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죠. 그렇게 처음 제정 운동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 후로도 모임에 계속 오라고 해서 1~2년 간 같이 만나다가 함께 하게 된거예요.

##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과정

**최정학** | 이름이 기업 처벌법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기업(법인)을 처벌할거냐에 초점을 뒀어요. 저는 거기서 기업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경영자를 처벌하자,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갔죠. 기업을 처벌한다고 하면 결국 벌금 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을 잡아 가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벌금을 얼마나 선고할거냐의 문제가 되는데, 정말 기업에 대한 벌금이 효과를 보려면 몇십억, 몇백억 수준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보면 겨우 몇 백만원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법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그동안 몇백만원 하던 벌금을 몇백 억으로 만들 수가 있냐. 안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약하다. 그러니까 경영자를 처벌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클 수 있다. 사람이니까 자유형(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실형을 선고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거예요.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경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는다, 그 이전에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이 대단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영자 처벌을 기업 처벌과 같은 비중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게 된거죠.

**김예찬**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때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들을 보면 운동 구호로 얘기를 하던 것이 갑자기 입법이 되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정학** | 처음 입법 운동을 할 때 민주당 몇몇 의원들과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발의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반대했구요. 그러니까 반대가 대부분이고, 처음 논의했던 두세 사람만 법을 만들고자 했던거고.

반대 논리가 주로 산안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사실 제정 운동을 처음 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죠. 산안법을 잘 개정하면 될 문제지 굳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법을 만드는게 운동적 효과를 내는 것도 있고, 또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재해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안법 개정하고 시민재해 관련 법안을 따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거니까. 그래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된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기존의 산안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과 체계가 잘 맞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산안법 개정이나, 중대재해법 제정이냐 이런 토론을 국회에서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은 아예 다 반대했고. 그러다가 제정되기 한 두달 전 쯤인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 제정운동본부에 연락이 왔어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때 제정본부 쪽에서 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취지를 설명하고 짝 얘기를 하니깐, 그 이후부터 국민의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기 시작한거죠. 민주당 버전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버전 중대재해법이 나왔죠. 그런데 임이자 제정안이 민주당 법안보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났던건 아니고.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내심 반대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있고, 자기 당에서도 제정안이 나왔으니 내놓고 반대를 하진 못했어요. 대신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태클이 있었어요.

**김예찬** |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에는 법무부가 주체로 되어 있는 조항이 많았는데, 고용노동부로 많이 바뀌기도 했더라구요.

**최정학** | 네, 그리고 중소기업체를 다 뺀다거나, 적용 제외한다거나, 유예한다거나. 형량도 완화가 많이 되었고, 강한 내용이 많이 빠졌죠.

## 명단공표는 기업을 제제하는 수단

**김예찬** | 저희가 알권리 운동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여러 명단 공표 제도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에 대해 정부가 명단을 공표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성범죄 정도가 대표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사실 내역을 공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최정학** | 그게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범죄재발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내리는 형사처분)의 하나죠. 보안처분은 형사적인 제제인데, 형법에 보면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벌은 법적으로 아홉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형벌을 새로 추가하지 않는 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제제가 있는데, 이러한 제제를 통틀어서 보안처분이라고 해요. 잘

알려진 보안처분이 전자발찌 채우는거. 보안처분은 예방의 성격도 있지만, 제제의 성격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 기업범죄를 제제하기 위해 감독인을 파견해요. 이를테면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드냐 감시하도록 감독인을 파견하는거죠. 한 1년 6개월 동안 그런 감독 작업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범죄와 연관된 대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처분.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공공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보안처분 중 하나가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공표하는거죠.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한거고. 사실 처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 때는 법안에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을 여러개 넣었어요. 강제 주식 매각 같은. 근데 그게 국회에서 다 잘리고 명단 공표만 남았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원래 공표 제도가 있지만, 이게 실효가 있으려면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그 원인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존재하는 제도는 한참 지나서야 공개를 하니깐 실효성이 약하게 되어있는거죠.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

**김예찬**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어떤 기업에서 무슨 산업재해가 일어났고, 원인이 뭐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가 잘 된다고 하면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지 않겠냐. 그냥 공표하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구인구직 사이트,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같은 곳에 구인공고를 올릴 때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좀 밝혀라. 그래야 구직자 입장에서 이 기업이 위험한 기업이라는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표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잖아요.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표가 시작이 되면 사고가 왜 일어났고 기업이 뭘 잘못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건데요.

**최정학** | 그렇게 되면 참 좋을텐데, 지금 하는걸 봐서는 산안법하고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판에서 확정된 후에 공개한다고 하면 최소한 2년은 지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구인공고 할 때 넣는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중대재해법 만들 때도 공개를 사고 직후에 해야한다, 아니면 최소한 기소 시점에는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구요. 무죄 추정해야 하는거 아니냐, 유죄 확정해야 공개할 수 있다 이거고.

**김예찬** | 그런데 영국은 기소를 하면 바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거죠?

**최정학** | 영국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을 구성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명단공개는 형벌은 아니다, 보안처분이니까. 유죄 무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예찬** | 미국도 사실 기소가 되어서 4만 달러 이상 벌금이 딱지로 날아오면 그 시점에 공개를 하는데, 유독 왜 한국에서는 공개를 안하는걸까요?

**최정학** | 이 부분만 진전이 없는건 아니고, 한국은 기업 법인을 처벌 할 때 양벌규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양벌규정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행위자, 개인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 행위자와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한다는건데, 그러니까 법인에 속해 있는 개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에, 그걸 조건으로 법인을 처벌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처벌 안 받으면 법인도 처벌 안 받아요. 법인만 처벌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일본 법에서 왔단 말이에요. 법인을 직접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개 안돼요. 한국, 일본, 독일 정도. 한국은 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독점하면 과태료 내고. 근데 이 과태료는 벌금하고는 법적 성격이 다르니까, 법인을 처벌하는건 아닌거죠.

**김예찬** | 벌금하고 과태료는 그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정학** | 벌금은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이죠.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니까 행정기관이 하고.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이 잘못된게 있으면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의 비용을 법인에 매겨서 돈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독일도 사실상 법인을 처벌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최근에 EU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법인을 처벌하라는 압력을 막 줘요. 이제 법인이라는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결되니까. 유럽에서는 처벌하는데 한국에서 처벌 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왜 처벌 안하냐, 처벌해라 이런 압력을 줘요. 독일한테도 EU가 그러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도 양벌규정만 보면 법인을 처벌하는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냐는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벌금 몇 백만원인데 이게 기업에게 형벌이라고 할 수 있냐는거죠. 그러다보니 한국은 기업을, 법인을 세계 처벌하는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거예요.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가 급선무

**김예찬** | 저는 항상 좀 이상했거든요. 이를테면 어느 식당이 식품위생법의 뭘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당 이름도 대표자 이름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공개를 안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인데, 식당은 그냥 공개해도 기업이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군다는 느낌? 산재 책임과 관련해서도 반올림 같은 곳에서 투쟁하는 내용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것도 이유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잖아요. 질병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문서인데 법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공개하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기업이라는게 어떤 존재이길래 정부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재판까지 가서 기업의 추상적인 이익이 굉장히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구는지...

**최정학** | 맨날 규제 완화하자고 그러잖아요. 경제 성장이 어찌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이게 지배 담론이니까.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주장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안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에 대흥알앤티라고, 김해 지역에 제조업체가 있는데 유독 물질 세척제를 써서 13명이 중독으로 인해 급성 간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두성산업도 똑같이 이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해서,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가 되었어요. 똑같은 유독 물질, 세척제를 썼는데 두성산업은 기소가 되고, 대흥알앤티는 빠졌단 말

이에요. 검찰이 밝힌 결정적 차이는, 세척제를 쓸 때 유독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환기하는 장치가 있어요. 국소 배기장치라고. 두성산업은 이 국소 배기장치가 아예 없어요. 해도 너무하지. 대흥알앤티는 이게 있었어요. 있긴 했는데 문제는 제대로 작동을 안했다는거죠. 근데 검찰은 어쨌든 안전장치가 있었고, 회사도 고치려고 노력은 했다, 그래서 기소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노동부가 1차 수사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둘 다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대흥알앤티하고 두성산업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다르게 한게 제대로 근거가 있는건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공개를 안하는거예요. 수사 관련 서류라고.

**김예찬** | 정보공개법에서도 수사 관련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대흥알앤티건은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닌거잖아요. 기소도 안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인간은 과실치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흥알앤티는 그런건 해당이 안되는거예요? 아무리 보호설비를 했어도,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했으면 기업의 실수로 산재 사고가 생긴건데.

**최정학** | 노동자들은 이걸 빨리 고쳐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기업이 말만 알겠다고 하고 안고쳤다는 주장이고. 회사는 이 장치에 몇몇 군데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쳤고, 점차 고쳐 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고. 검찰은 일단 고치려고 시도는 했고, 예산 배정도 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는 다 지켰다고 보는거고. 근데 지금 노동부에서 보기엔 또 달랐으니까 기소 의견을 냈던거거든요. 이것도 중대재해 보고서가 공개가 된다면 좀 더 노동자들의 입장을 보강할 수 있지 않나 하는거죠.

**김예찬** |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의 차원에서 재해 조사 보고서가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노동부가 이걸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주춤한 것 같은데. 질병에 대해서도 작업 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구요. 또 어떤 정보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까요?

**최정학** | 일단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그걸 조사하는거니까, 그 보고서를 공개하는게 급선무다. 그래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거구요. 그리고 기업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 의무

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공개를 해야 하고.

## 안전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

**김예찬** | 파리바게트 불매 운동에서 보듯이 최근 노동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지지하는 분도 많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을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엄청나게 내용이 바뀌고 축소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을 반대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저도 중대재해처벌법 당연히 제정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있진 못했고, 입법 과정에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도 모르다가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정학** | 좋은 지적인데, 중대재해법 만들 때 여론조사 하면 70% 이상이 지지했어요. 제정 이후에도 60%가 넘는 시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지한다, 재해의 책임이 결국 기업과 경영자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막연하다는거예요.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니까. 기업에서 안전 보건 관리 의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는게 잘 되고 있는지, 이런걸 잘 모르잖아요. 이런걸 노동부가 자세하게 공개를 해야 기업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막연하게 기업이 문제다를 넘어서, 기업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그럴거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김예찬** |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넷 구인공고와 산업재해 현황을 매칭시키는 웹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낙인 효과나, 기피 현상이 있지 않겠냐고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최정학** |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때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만 처벌되는거 아니냐, 대기업은 그래도 돈을 투자해서 안전 관리를 하니까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영국도 기업 살인법 만들어진 이후에 90% 이상이 중소기업 아니

냐는 얘기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목표가 재해를 줄이자는 건데, 그럼 중소기업에 적용이 되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강조한게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는거예요. 원하청 관계가 워낙 많으니까, 맨날 하청업체 후려치니까 하청기업에 안전 예산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원청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해야,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16조에 정부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체의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넣었어요. 이걸 형식적으로 넣은게 아니라, 정말 정부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체 안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거고. 또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라는거구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정부-기업-노조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안전 예산을 정하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런걸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 노사정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산업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안전 투자를 요구하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쓰고.

맨날 정부가 반도체 육성에 몇십 조를 투자한다, 이런것만 하지말고 한 백분의 일이라도 안전에 투자해야 하는거 아니냐. 정부나 기업에서는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일하다 보면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김예찬** | 자기들이 죽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최정학** | 그렇죠.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해요. 대기업 경영자의 아들이나 손자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안전 의무 지키는게 완전 달라질거다.

**김예찬**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로감독관이 임금 문제도 다루고, 해고 문제도 다루고, 산업안전 점검도 해야 하는데 수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 중에서는 노동 문제에 대한 특사경 역할을 좀 나눠 달라, 이런 주장도 있던 것 같아요.

**최정학** |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로 그런 걸 했어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수가 몇백명 수준이니까 그렇게 많은 현장을 커버하지는 못했을거예요. 사실 중요한 지적인데, 중대재해법도 이제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 수사를 할 시간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겠다고, 수사능력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이런 계획을 짰어요.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새로 만들고 본부장까지 뽑았는데, 정권 바뀌니까 그 본부장이 차관으로 가고. 산업안전보건청 얘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로감독관이 늘어나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령 강제조사권이 없다고 해도 중대재해를 바로 접수하고 살펴본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거 같아요. 또 시민단체 중에 인권연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산업재해 감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산업재해 현장 감시 활동을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단체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경찰도 이제 자치경찰이 되었는데, 특별사법경찰 역시 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

# 보는 것은 되지만, 받는 것은 안되는 안전보건자료

반올림 | 조승규 노무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고발한 것으로 잘 알려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오랜 기간 동안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기업들에 맞서 일터의 안전보건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를 만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예찬 | 먼저 노무사님이 어떻게 반올림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조승규 | 원래 사회학과 나왔거든요. 학교 다닐 때 노동 이슈에 관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질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노동자 건강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사실 그때는 최저임금이나 정리해고 투쟁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자 건강권이 중요한 운동의 화두로 떠오를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무사가 되었는데 어떤 곳에서 활동할까 고민하던 차에 반올림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게 된거구요.

김예찬 |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셨던건가요?

조승규 | 학부 때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이 사회학과 교수로 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걸 함께 했는데 나중에 반올림 와서 보니까 이종란 노무사님 이랑, 황상기 아버님이랑 같이 기자회견 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있고, 사실 노무사가 되고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노무사로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반올림은 이종란 노무사님이 계시니까. 노무사로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나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 열람은 실효성이 없다

김예찬 | 반올림의 활동 영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거죠?

조승규 | 주로 전자산업에서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피해가 많죠. 유해요인 중에서 화학물질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 외에 방사선이라던가 전자기파의 문제. 너무 빠른 업무 속도라던가 긴 근무시간, 야간 근무와 같은 인간공학적 문제도 있구요. 사실 직업병의 요인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김예찬 | 제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다보니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다, 이건 알고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정보공개에 대해 또 어려움을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

조승규 | 있죠.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 우회적인 방식이잖아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정부를 통해 공개 받는 방식인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조항이 모두 '볼 수만'(열람) 있는 권한이거든요. 열람할 수 있다, 아니면 게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장의 한 구석에, 노동자들이 알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만 해놓는. 그런 조건인거죠. 안전보건자료 뿐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적인 노동조건을

「투명  
사회  
만들기」

규율하는 취업규칙 마저도 게시 의무만 있지 노동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나도 모르게 당하는거죠. 취업규칙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제기하려다 보니 취업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김예찬** | 그럼 ‘열람한다, 게시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걸 복사본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사업장의 분위기 상 어렵다는거죠?

**조승규** | 열람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분석을 하려면 가지고 나와야하잖아요. 내용이 엄청 두꺼우면 열람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거고. 대기업으로 갈 수록 규정이나 자료들이 엄청 많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열람해서 문제를 찾는게 어렵죠. 사진으로 찍어오기도 어려운 수준인데. 공장이 넓으면 어디에 뭐가 게시되어 있는지도 본인이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현장의 역학 관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김예찬**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좀 더 자료를 확보하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조승규** | 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곳은 사실 알권리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노조가 자료를 구비하는 경우도 있고.

**김예찬** | 산안법에 보니까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승규** | 정확히는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근로자 대표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거든요. 선출 과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니까. 만약 과반수 노조라면 노조 위원장이 대표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과반수까지 조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구요.

**김예찬** |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래도 자료 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상황이 나아지는 거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좀 어려운거고.

**조승규** | 저희도 대응을 할 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확실히 다르죠. 모 반도체 회사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거긴 노조가 있었거든요. 노조하고 소통하니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으면 알권리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은 아예 자료를 못받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정말 답답하죠.

**김예찬** | 반올림도 삼성을 대상으로 싸웠해보니까, 노동조합이 없어서 더 어려웠겠네요. 기흥 공장 앞에서 유가족분들하고 ‘알권리는 살권리다’ 이런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랬던데.

**조승규** | 그 당시에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었고, 또 반도체나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지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피해자의 증언을 가지고는 문제를 입증할 수 없었던거죠. 작업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썼는지, 공장이 어떤 환경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답답했던 거고, 그래서 알권리를 중요한 관심사로 둘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공장 사업장의 노동 환경, 위험 요인은 이미 많은 전문가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반올림 운동에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 알권리 가로막는 ‘영업비밀’

**김예찬** | 김용균법 만들 때도 MSDS 공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 과정에서 나온건가요?

**조승규** | 일단 김용균법 만들 때 MSDS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고, 특히 영업비밀 제한하는 것이 큰 이슈였어요. 사업주가 MSDS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게 영업비밀인지 여부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하도록. 그런 내용은 담겼는데, 노동자들이 MSDS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빠졌죠. 그때 노동부가 MSDS 공표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법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졌구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자료를 직접 받을 권리, 사업주의 공개 의무를 주장하고 있는거고.



김예찬 | 내용을 보니까 전직, 현직 노동자들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던데, 따로 제한 사항은 없는거구요?

조승규 | 기본적으로는 그렇구요. 만약 입법 과정에서 제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요. 산재 신청 과정에서만 써야 한다거나.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래 사업장에 게시 되는 자료니까, 원래 볼 수 있어야 하는 자료예요. 사업장 안에서만 보냐, 아니면 받아서 보냐 이 차이니까 제한이 없는게 맞다고 봐요.

김예찬 |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자료니까, 달라고 하면 주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업에서 자꾸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니까. 국가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는건 당연한건데, 자꾸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게 이상하기도 하고. 반올림에서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하라고 할 때 계속 영업비밀이라 안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승규 | 일단 그게 정말 영업비밀이냐, 여기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위험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 신청할 때 자료로 쓰려고 달라는건데, 뭐 중국에 넘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영업비밀이라고 막는게 정당한가. 현행법 상으로도 일단 '게시'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노동자들이 알라고 하는건데, 그걸 달라고 한다고 영업비밀 어쩌구 하면 현행법을 부정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현행법 상으로도 알려야 하고, 또 현직자들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알 수 밖에 없는 정보잖아요. 그걸 산재 신청 할 때 쓰려고 달라는거거든요. 그걸 안주겠다고 월권이죠. 지금도 알 권리가 없는게 아니에요. 사업장들이 안주는걸 당연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 산업재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

김예찬 | 또 궁금한게, 자신의 질병이 산업재해가 아닌가 하고 찾아오는 노동자 분들이 산업재해 신청 과정이나, 산업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좀 인식하고 있는 편인가요? 사실 내가 산업재해를 당할거라는 생각을 보통 잘 안하잖아요.

조승규 |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인지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같은걸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긴 해요. 규정도 만들고.

김예찬 |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본거거든요.

조승규 | 반도체 공장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그래도 좀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업 과정에서 유해 요인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데, 맨날 그 일을 하니까 약간 무더지는게 있고. 그런데 작업자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그 경우가 사실 문제죠. 기술자들 같은 경우도 산업안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안다기 보다는, 일을 하려면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는거고. 또 위험 상황을 더 많이 마주하니까 알게 되는거죠. 안전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주변에서 산재 신청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거고. 상사가 그런거 안된다더라, 하면 안하는거고. 주변인의 조언이 있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 알려져야 하는거죠.

김예찬 |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 전달의 결과로 산재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주변인의 이야기, 우연적 계기에 의해 산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조승규 | 네. 사실 회사에서 나서서 산재 신청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요. 법에 비록 애매하지만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조력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산재는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보험이기도 하니까요. 근로기준법 상 원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거예요. 근데 그걸 보험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산재보험이 있는거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하다 아파서 직업병이 생기면 사업주가 산재 신청 꼭 하라고 알아서 가르쳐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죠.

김예찬 | 일하다가 다치면 그냥 공상 처리해라, 이러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이유는 뭘까요?

조승규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산업재해가 있으면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

어요. 대기업 원청에서 산재가 안나는 걸 조건으로 위탁으로 한다거나. 산재가 일어나면 점수를 깎는다거나. 그럼 당연히 재위탁이 어려워지니까 산재를 은폐하는. 또 사업주들의 오해도 있죠. 일단 산재 인정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의 경우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사고의 경우라도 1건 발생에 따라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예찬** | 산재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게, 산재 은폐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산재를 은폐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조승규** | 공상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있을거고, 산재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기도 해요. 산재가 나면, 사업장에서 보고 의무가 있고,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투 트랙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보고가 오는건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신청한 산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는거죠. 그럼 당연히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산재를 당해도 제도를 몰라서 안넣을 수도 있고, 신청했는데 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 산재 신청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구요.

**김예찬** | 일하다가 좀 다쳐도 뭐 이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조승규** |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거든요. 코로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홍보를 했는데, 다만 산재 신청해도 실익이 별로 없긴 하죠.

**김예찬** | 검사 비용이나 치료비가 크게 안드니까?

**조승규** | 그런 비용이 별로 안들고, 또 격리 기간 중에 월급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가 국가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산재 신청 해야하나? 그런 생각도 있을거구요. 코로나 산재 신청한 사람이 1천 명도 안될거예요. 저는 요양보호사들도 상담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가 많이 걸렸잖아요. 상담하면서 보니까 일단 산재 신청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도 별로 없고, 실제로 대리해보니까 실익이 별로 없어서 내가 봐도 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유증에 대한 보험 보장을 잘해주냐 하

면 그것도 아니니까.

## 재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산재 인정 절차

**김예찬** | 산재 신청 절차의 번거로운 부분도 얘기해주셨는데, 그럼 노무사가 산재 신청을 대리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피해자 혼자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조승규** |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요새 어지간한 행정적인 절차는 신청서에 쓰라는 내용만 쓰면 끝이잖아요? 근데 산재는 오히려 소송처럼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내가 신청을 하고, 근거들을 모으고, 입증을 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다른거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산재가 인정되는지 이런걸 알기도 어렵고.

**김예찬** | 그런 기준들이 공개가 안되고 있나요?

**조승규** | 공개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명확한 선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구요. 근 골격계 질환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되는가, 분명히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이야 대략적인 기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은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문가랑 상담하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고, 또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잖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야 한다, 이걸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냥 너무 힘들었다,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김예찬** |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기 힘든거죠.

**조승규** | 일하는 분들은 그냥 힘들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힘든 업무를 했다, 예를 들어 노인을 계속 들어서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인정 받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몇 kg 무거운 물건을 몇 번이나 옮겼다 이런걸 누가 미리 기

룩하고 뽑아 올 수 있겠어요? 그런걸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라도 확인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김예찬 | 공단 쪽에서는 상담 해주는게 없나요?

조승규 | 따로 상담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구요, 조사 과정이 있는데 이게 신청자를 도와주기 위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힘든 일을 정말 오랜 시간 일해서 인정 받는 경우면 모를까.

김예찬 | 사실상 노무사를 찾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저는 국가에서 상담해주는 센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조승규 | 그런게 없어요. 물론 요새 기관에서 노무사들을 고용하거나, 무슨 권리보호관으로 위촉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단에서 직원들, 담당자들이 찾아오는 분들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근무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줘도 다행인 수준.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이 그런거고, 농업인이나 어업, 선원 이런 분들은 보험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곳은 재해 조사를 안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자료가 없으면 그냥 평인거죠.

김예찬 | 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올텐데, 질병, 질환 이쪽은 근거가 되는 통계나 조사 자료를 믿을 만한게 많지 않겠네요.

조승규 |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구요.

## 먼지가 없는 청정 산업의 실체

김예찬 |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반올림에서 여러 투쟁을 했지만 대표적 인게 삼성이잖아요. 삼성에서는 직업병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조승규 | 거기에 신경 엄청 쓰죠. 이게 직업병일 수 있다는 걸 사실 부인한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였을거고. 또 실제 일하는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의 문제도 있을거구요. 삼성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한게, 우리 반도체 사업장 시설이 얼마나 최신이고, 첨단이고, 깔끔한지 강조한거거든요. 사실 그건 직업병 이슈랑 관련이 없는거잖아요. 화학물질의 문제니까. 그래도 그런걸 강조한게,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거죠. 반도체는 먼지가 없는 청정 산업이다, 그 부분이 브랜드 가치랑 연관이 되어 있을거고. 직업병 리스크를 인정하면 따라오는 책임의 문제도 있고.

김예찬 | 삼성처럼 대기업이 아닌 곳은 어떤가요?

조승규 | 생각보다 반도체 산업에 중소 규모 공장도 좀 있는데, 그런 곳도 마찬가지로.

김예찬 | 그렇다면 만약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다, 직업병이 이만큼 있었다 그런걸 기업별로 공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신경을 쓸까요?

조승규 |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다만 기업들이 공표되는 것을 일상처럼 여긴다면 공표 자체로 산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뭐든 한방에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은 없잖아요. 그나마 그런걸 공개하고, 또 여러번 공개하는 곳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실효성이 하나하나 늘어나는거니까.

김예찬 | 몇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수의 중화학 공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체크하는 위탁 기관하고 짜서 배출량을 축소해서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반도체 산업, 전자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때문에 지역사회에 피해가 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나요?

조승규 |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김예찬 | 한국에서 그렇다는건 외국에서는 있었다는 건가요?

조승규 |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지역 주민의 운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또 대만에서 옛날에 RCA라는 전자산업 회사가 있었어요. 외국계 자본이었는데, 공장 철수하면서 화학물질을 폐기 안하고 간거죠. 지하수는 원래 부터 오염되어 있었고. 관리자들은 맨날 생수 마시고. 그래서 영구 오염 지역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운동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김예찬 | 한국에서도 공장이 이전하게 된다가나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런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조승규 | 아직 한국에서는 RCA와 같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지요. 사실 한국에서는 공장을 옮기지 않아 사용했던 반도체 공장 부지가 어떤지 확인된 적이 없어요. 미래에 지켜보아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김예찬 |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자면,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딱 떠오르시나요?

조승규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의 자료를 노동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가요. 근로계약서 교부 받는 것처럼 사업장의 여러 규정들, 산업안전보건 뿐 아니라 일터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요. 지금도 물론 알권리가 있지만, 그건 보는 것(열람)만 가능하고 받는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되지 않아요. 보는 건 되는데 받는건 안된다고?

지금은 산재 인정 받을 때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시스템 내역을 봐야하고. 그 자료를 못받으면 교통 카드 내역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협조를 바랄 수 밖에 없는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협조'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달라고하면 되니까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

# ESG 평가의 관점에서 본 산업재해 정보공개

ESG 평가기관 | 유○○ 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최근 몇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ESG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추던 ESG 담론에서 ‘사회’ 영역의 산업안전 문제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생겼다. 반면, ESG 평가가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지 회의하는 반응들도 적지 않다. ESG 평가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보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과 평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졌다.  
.....

김예찬 |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 | 저는 ESG평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이구요,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예찬 | ESG 평가를 한다면, 노동안전과 관련한 내용들도 평가 내용에 들어가는건가요?

유○○ | 네, 사회(Social) 영역이구요,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인적자원 관리 파트에서 산

업안전이 들어가는거구요. 그 영역에 또 근로 조건도 들어가구요. 만약 어떤 회사의 임금이 해당 업종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 핵심 인력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도 어려워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구요, 산업안전 역시 그러한 평가 조건 중에 하나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있는 한국에서 더욱 중요하구요. 저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평가사들도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을 평가 지표로 삼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어요.

## 시의성도, 활용성도 떨어지는 공표 방식

김예찬 | 한국에서 산업재해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주로 한국 기업들을 평가하실텐데,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어떤 수준일까요?

유○○ | 해외하고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비교를 하려면 같은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없구요. 한국에서만 보자면, 일단 공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 정보가 없는 경우 언론사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이 공시 정보인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일단 1년 뒤에 공개되는 것이고, 게다가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어서 가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죠. 전혀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상태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인식번호가 없으니까 유사한 이름의 회사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업종이나 주소로 수기 검토 할 수 밖에 없구요. 표 형식도 원청/하청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가공해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예찬 | 저희도 작업을 하면서 완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표하는 정보마다 표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유○○ | 네, 열이 서로 다른 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동일하게 묶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로인데, 사실 정부가 정보를 공표할 때는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찬 | 아까 산업안전 영역은 사회(Social) 영역에 속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영역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아니면 다른 고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더 있잖아요?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 영역, 산업재해 정보 공시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유○○ |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임금 정보 등은 기업 사업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은 DART에 회사별로 공시가 다 되어 있어요. 또 데이터가이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어지간한 정보는 거기서 일괄 다운로드도 가능하구요. 그런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비하면, 산업재해 관련 정보들은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찾기 힘든거죠.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공표를 하는 정보들도 시점이 한참 뒤라는거예요.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보통 2021년의 정보에 대해서는 2022년 3월~4월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2021년의 정보를 2022년 12월 말이나 2023년 초에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정보에 비해서 딜레이가 반년이 넘는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거고, ESG 평가라는게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데이터들을 살펴보는게 의미가 없거든요.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야 하는데, 시의성이 떨어진다는건 큰 문제죠.

김예찬 |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들도 다른 정보들처럼 사업보고서에 같이 공시를 할 수 있으면 평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유○○ | 지금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라고 해서 IFRS(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한다는 글로벌한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IFRS 회계 기준을 가지고 와서 KIFRS를 쓰잖아요. 만약 ISSB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IFRS에 반영이 된다면 공시 의무 정보들이 더욱 확대가 되겠죠. 사실 여기서 핵심은 산업안전 보다는 탄소배출이나 기후위기 관련 이슈들이긴 해요. 그래도 지속 가능성에서 산업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런 정보 확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정보들은 다 국내 사업장 얘기잖아요. 보통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 그러니까 종속회사의 법인들도 다 포함한 재무 정보를

올려야 해요. 만약 ISSB 기준에서도 그렇게 정해진다면, 한국 기업들에 종속하고 있는 해외 사업장의 ESG 정보들도 같이 공개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났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언론 보도 밖에 없거든요.

김예찬 | 그렇죠. 정부가 알려주진 않을거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상...

유○○ | 물론 산업재해나 아니냐는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겠지만, 그래도 해외 사업장에서 난 인명 사고에 대해 국내 회사가 책임이 없는거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의 문제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의 문제들도 같이 평가를 하는게 맞는거죠.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김예찬 | 앞서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하는게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그것도 전부를 공개하는게 아니잖아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1년에 2인 이상의 인명 사고만, 아니면 사망사고 만인율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많을 때만 공개하니까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보고서에서 그 기업의 산업재해 전체 현황을 알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유○○ |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머나먼 일처럼 느껴지고...

김예찬 |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거죠?

유○○ | 그렇다기 보다는 법적인 의무로 만들지 않는 이상 공시할 유인이 없고, 해외 사업장은 또 공개한 정보가 맞는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거고. 국내법도 바뀌어야 가능한 일인니까요.

##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김예찬 | 지금 평가 작업을 할 때 보는 데이터들은 보통 사망사고인거죠? 질병이나 상해

는 빠지는거고.

유○○ | 네, 평가는 애초에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표를 설정해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걸 평가할 데이터가 없으면 무의미한거거든요. 평가라는게 어떤 섹터에 대해서 회사들을 비교해서 점수를 주는 작업인데, 모든 회사가 0점이면 지표가 의미 없는거구요. 사실 해외 평가사들 보면 MSCI나 서스테이널리티스 같은 곳들의 지표는 저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 지표들을 적용하면 아마 공란이 되는 지표가 굉장히 많을거예요.

김예찬 |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유○○ |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게 우선이고. 질병 관련해서도 적어도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사망사고 위주로 평가하는건 그런 이유가 있고.

김예찬 | 사망사고를 보면 대부분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에 몰려 있더라구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중화학 공업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는 사실 사후에 나타나는 질병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 산업군이 좀 점수가 너무 낮게 쳐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 | 그래서 섹터별로 지표 가중치를 다르게 두기도 하고, 또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투자 용법이 있어서 그 섹터를 전부 비교하는게 아니라 동료 집단 보다 더 잘하는 곳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기법도 있구요.

김예찬 | 그럼 또 다른 맥락에서 여쭙볼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산업재해 사고 사업장 목록을 만들어서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거죠? 저희도 지금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의원실 같은데서 요구하면 주는 자료도 있거든요. 사고 전수 자료. 그런걸 좀 공적인 데이터로 만들면 평가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 | 그렇죠.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매년 정기적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게 나오면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김예찬 | 형식도 같아야 되고, 매년 동일하게 신뢰성 있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 | 네, 공시 상황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최대한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에 A라는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공개가 제대로 안됐어요. 근데 올 해 B라는 업체의 사망사고가 공개가 되면, B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김예찬 | 결국 고용노동부의 공표가 공신력이 있고 정기적이니까. 그럼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정보를 보다 범위를 넓히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유○○ | 모든 사업장의 산재 현황을 의무공시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기준을 만들면 가능할수도 있겠죠. 2025년까지 여기까지, 또 2030년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로드맵이라도 나오면.

김예찬 |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중대재해 사고 사실 공표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 처벌 받은 기업이 안나왔으니까. 만약 처벌 받은 기업이 나오면 이런 정보도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되는걸까요?

유○○ | 중대재해 같은 경우 이미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요. 지표를 평가는 주로 시스템을 평가해요. 회사에 안전관리 조직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같은. 그런데 어떤 기업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조직을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산재가 발생한다면 그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느냐 보다,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적인 처벌은 딜레마가 좀 있잖아요. 물론 회사가 충분히 반론을 할만한 내용이면 차감할 수 없겠지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차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거죠.

## 기업과 투자자 관점에서 정보공개 필요성

김예찬 |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겠냐. 콧방귀라도 뀌 것 같냐. ESG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 일단 투자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산재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해외 연기금 같은 경우, 집속탄 같은 위험한 무기 만드는 회사에는 투자 안한다고 목록을 공개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풍산이 계속 걸리고 있고, 결국 ESG는 투자자 입장의 역할이잖아요.

물론 요새는 안티 ESG라고 해서 전쟁이나 방산에 투자한다거나, 신 스탁(Sin stock)이라고 해서 주류, 담배, 카지노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 보면 연기금들은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ESG를 고려하는 거죠.

ESG도 결국 IR 활동이거든요. Investor Relations,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거인데.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재무에 대한 것, 상품에 대한 것만 얘기했다면 요새는 ESG에 대해 기업에 계속 질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미래 산업을 잡아서 잘 나가고, 재생에너지나 배터리도 보면 큰 범위에서 ESG와 연관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가고 싶지 않아한다거나 하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윤리적인 문제,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돈의 시선으로 봤을 때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꺼리고.

김예찬 | 사망사고 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기업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어떤 윤리적 요인보다도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재 예방에 나설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지?

유○○ | 네,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쨌든 작업 중단 명령이 떨어지고. 그럼 그날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김예찬 | 그런 플로우가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공신력 있는 산업재해 정보를 공개하는게 산재 예방에도, 또 기업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보는 거죠?

유○○ | 그렇기도 하구요. 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내용도 공시가 될 수 있잖아요. 산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공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몇년 이상 누적되면 트렌드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 산업재해 정보공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김예찬 | ESG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산업재해 정보공개에 또 어떻게 개선이 필요할까요?

유○○ | 정보를 공개한다면 일단 형식이 중요해요.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합니다. DART 같은 경우는 OpenDART라고 해서 API로 해주거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다른 정부부처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나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를 고려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예찬 | 정보공개를 넘어서 데이터공개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하고 있어서 반갑네요. 혹시 더 이야기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유○○ |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질병 같은 경우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시간이 걸려서 평가에 반영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 평가 자료로 의미가 있는데, 기업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기관 상황에 따라서 산재 인정 시간이 달라지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에 따라서, 시점을 정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거 같구요.

기본적으로 상장사 중심으로 공시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공개 대상을 확대할지 로드맵을 발표하는게 실효성도 높이고, 기업에게도 여유 기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너무 같은 룰로 모든 기업을 커버하려는 것 같고.



김예찬 | 맞아요. 이런 문제를 다 신경 쓸 수 없는 작은 기업도 있으니까... 또 아까 비슷한 이름의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 구분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유○○ | 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업장은 주소지나 업종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수기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말 찾기 쉬운 이름도 있지만, 한자어 두개로 되어 있는 회사는 국내에 한 두개가 아니니까 인식번호 없이 찾아보면 확인할 수가 없죠.

김예찬 | 정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공개를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유○○ | 그렇죠. 그리고 또 이름이 같아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거고. ◆

#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알권리는 없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박선희 노무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재가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못지 않게 이주노동자들의 사고 재해율이 늘어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언어 등의 문제로 일터의 위험 요소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알권리 문제에 대해 듣고자 지난 20년 간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온 박선희 노무사를 만났다.  
.....

**김예찬** | 안녕하세요, 저희가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해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박선희** | 저희는 경기도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센터인데, 사실 전국에 이주민 상담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 위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도 있고. 센터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보통 상담을 많이 하구요. 임금체불, 산업재해, 체류자격 문제 등 여러가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 접종 어디서 맞냐,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구요. 상담을 하는 곳들은 보통 그 지역에 많이 사는 이주민 국적으로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가 워낙 넓다보니 상담을 중심에 둔다기 보다는, 실태조사, 포럼, 심포지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도 상담을 많이 오시긴 하죠.

보통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은 각각 국적의 통역이 있는 곳으로 많이 가시고, 저희 센터에는 아프리카계 난민 신청자들이 오세요. 어딜가도 그 지역 언어로 통역을 안하니깐, 그냥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죠.

## 이주민은 모두 잠재적인 노동자다

**김예찬** | 다양한 이주민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이주노동자 분들도 계시는거구요.

**박선희** | 주로 이주노동자 분들이 오시는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딱 잘라 나누기가 애매해요. 체류 자격으로 나눌 수도 없고. 어떤 비자로 오든지 일하러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또 난민 신청을 했어도 당장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하잖아요. 한국에 오신 모든 외국인들이 잠재적인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 보다는 잠재적인 노동자다, 이렇게 봐요.

**김예찬** | 어떤 비자로 오든, 어쨌든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박선희** | 그렇죠. 이주노동자 중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비중이 높긴 한데, 노무사다 보니까 그 분들 상담도 하죠. 직접적으로 찾아 오시는 분보다는, 의정부에 있는 센터에 시흥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서 노무사가 필요하다, 하면 여기로 가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구요.

**김예찬** |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 체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연락이 되는대로 들어 들어오는거죠?

**박선희** | 네, 그래서 친구가 여기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동두천에서 안산까지 오는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상담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는 여러 이주민 관련 기관들, 단체들이 서로 지역별로 안내를 해서 상담을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김예찬 | 경기도에 있는 단체들끼리 상담 워크숍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선희 | 정기적으로 모여서 전문가들 강제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포럼도 열고. 아무래도 경기도가 남쪽과 북쪽의 거리가 있다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 ‘노동’의 관점이 없는 외국인 정책

김예찬 |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중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내용들도 꽤 있는 편인가요?

박선희 | 있죠. 노동 문제라면 임금체불 다음에 산업재해. 그 다음이 부당해고. 일단 언어와 정보의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뭘 모르니까 사인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또 산재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님하고 얘기해보면 한국인들도 잘 모르고 사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더 심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김예찬 | 한국인들은 산재 보험이 있는건 알지만, 이게 절차가 어려워서 신청을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주 노동자들도 산재 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 자체를 잘 알고 상담을 하러 오는 편인가요?

박선희 | 이제는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잘못 아는 경우도 있구요. 다치면 뭘가가 있다는건 아는데 디테일하게 아는게 아니라서. 간혹 ‘산재로 다치면 사업주가 나에게 뭉텅이 돈을 줘야한다’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구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재에 대한 지식 수준은 한국인보다 낮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이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치료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붓대 싸매고,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으로 해야지! 이런. 그런 경우 제도를 잘 몰라도 이걸 참 부당하다, 하고 상담하러 오는 분도 있고. 산재 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인

식 보다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껴서 오는거죠.

김예찬 | 이주 노동자들에게 정부에서 산재 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잘 안되고 있는걸까요?

박선희 | 비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분들이 E9 비자에요. 그분들은 취업 교육 시에 일정 정도 안내를 하는걸로 알고 있고. 한 2박3일 정도 교육이 있는데, 사실 내용이 깊은 것도 아니고. 교육생들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으니 교육에 엄청 집중하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막상 자기가 당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나마 E9비자는 서로 알고 지내고, 친구도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좀 낮고. 중국 동포들도 말이 통하고 취업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의 비자들이나 난민들. 난민 신청자도 6개월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비자 문제, 난민 문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노동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 취업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접수 받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던거죠.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오케이였고. 지금도 최저임금 정도는 신경을 쓰지만, 그 이외 부분에는 전혀 안내가 안되고 있어요.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민을 오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민 정책에서 노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거고. 이민청도 법무부가 끌고 갈거 아니예요. 그 과정에서 노동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김예찬 | 진짜 좀 그렇겠네요. 법무부는 주로 출입국 관리, 외국인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상 이민이라는게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박선희 | (법무부 쪽에서는) 이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나 안 했나, 이런 것만 본다는거죠. 또 외국인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문제가 많은 케이스가 미등록, 비자가 없는 분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있으니까 다쳐도 참고. 그래도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다쳐서 치료 중인 사람을 쫓아 보낸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불안한거죠.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 쫓아오나? 이런. 또 비자는 있지만 취업 자격이 안되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 가족이 있어서 방문한 분이라거나. 유학생이라서 취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취업에

제한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어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이게 출입국관리국에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자 연장을 하러 갈 때 벌금을 내거나, 한번 더 걸리면 출국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를 안하려고 하고, 산재를 당해도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구요.

**김예찬** |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도 이주민들, 체류 자격 없는 분들이 확진이 됐어도 신고를 못한다거나,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신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니까.

**박선희** |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나중에 비자 연장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어려움 감수하면서 밀린 월급 받을 거냐. 그럼 100명 중 99명은 비자가 최우선이에요. 출입국관리법에 통보 의무가 있어서, 행정기관에 체류자격 없는 사람이 오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건 교직원이거나, 의사라서 환자로 받는다거나,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 같은 몇가지에 불과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산재 치료를 하려면 외국인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출입국에 얘기를 해야한다... 그런건 사실 행정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런데 사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치료와 직장 복귀잖아요. 이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재가 은폐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거죠.

## 직업병을 인식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

**김예찬** | 산재 사고도 그렇지만, 질병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박선희** |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한국인도 물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거의 고민을 하지 않고, 산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쉽지도 않고.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이유 자체가 싸고, 젊고, 건강해서잖아요. 보통 저임금이지만

힘든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단이 안 나와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도 의사 소견서에 그냥 요양이 필요함, 이 정도만 나오고. 무겁고 힘든 업무를 하더라도 몇 킬로 짜리를 하루에 몇번이나 드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김예찬** |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없을거구요.

**박선희** |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회사를 옮기고 싶어해요. 병나기 전에 옮겨야지.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20대 초중반으로 젊어서 근골격계 질환이 한국인보다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유족들이 내심혈관계 질환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비자 없는 분들이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분도 많아요. 젊을 때 한국에 바짝 돈 벌러 온 사람이니까, 연장근로가 없는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장근로의 한도를 뒤편할 거 아녜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일요일은 쉬어야 돼. 근데 일요일도 안쉬고 일하는 곳도 있고. 미등록 노동자들 쓰는 곳은 주52시간제 안지키는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증거 수집이 어렵죠. 사실 한국인이더라도 유족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끈질기게 해야 산재 인정이 되는데, 외국인이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동료들도 같은 미등록 상태니까 누가 함께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는 비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최근에 '지구인의 정류장'이 문제 삼는 기숙사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화재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본국에 있는 가족은 위로금 차원에서 한 70만원 받으신 거고.

**김예찬** | 어쨌든 화재 사망 사고면 조사 보고서가 있을텐데 전달이 안됐다는거죠?

**박선희** | 그렇죠. 유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경찰에 가서라도 받았겠죠. 그런데 베트남에 있으니까. 만약 안전 관리 책임이 제대로 안지켜졌으면 산재 가능성이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니깐 그런걸 알수 없는거죠. 외국인이라서 생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업무상 질병에 대해 가끔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젊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접한 적이 없는거죠.

**김예찬** | 확실히 젊은 남성들의 그룹이니까 업무상 질병을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네요.

**박선희** |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고 안달이 나는거예요. 화학약품을 쓰면 그게 누적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통 길게 있어 봤자 한국에서 9년 8개월을 일해요.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그렇게 일하고, 네팔로 돌아 가면 발병하는거죠.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데 근속기간을 보는데, 젊어서 일할 때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발병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뿐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죠.

### 업종/언어별로 안전 정보 전달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김예찬** | 그리고 보니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다가 본국 돌아가서 직업병을 인정 받았다, 이런 얘기를 아직 못들어본 것 같네요.

**박선희** | 2005년에 노말렉산이 든 세척제를 썼던 태국 노동자들이 중독 증세가 나타나서 사지 마비가 왔어요. 그때 안산이주민센터에서 더 알아보니까 그 전에도 노말렉산을 쓰던 중국인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발병한 경우가 있던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사용하던 화학약품 때문에 병에 걸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웠던거죠.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공장 냄새가 이상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놓지도 않고, 비치해놓는다고 해서 열람도 어렵죠. 한국말이니까.

**김예찬** | 그것도 좀 궁금한데,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경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외국인이면 그 나라 언어로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건 없죠?

**박선희** |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다국어 표지판을 만들거나, 기호 같은걸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한 것도 있기는 한데, MSDS까지 제대로 번역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취업규칙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하지

만, 사실 그런데가 없죠. 서랍 안에 넣어놓고, 외국인이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도 좀 번역이라도 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또 안전보건교육도 보면, 건설업은 좀 낫더라고요. 또 제조업은 화학공장 갔다가, 목재공장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설업은 업종을 건설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무슨 말로 교육하냐고 물어보면 한국말로 교육을 한대요. 그래도 동영상으로 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안다, 보통 하는 업무만 주로 반복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일반 제조업은 산업안전 교육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업종별로 하는 일이 너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위험 요소를 부각하는 교육을 세부 업종별로 나눠서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고. 어쨌든 통역도 좀 해줘야 하고. 근데 이걸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는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김예찬** | 정부에서 그런 교육 자료를 그 나라 언어로 마련하는게 필요한 것 같네요.

**박선희** | 업종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일이면 자세 같은 걸 주의시키고. 화학물질은 어떤 화학물질이냐에 따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호구는 뭘 써야 하고. 이런 내용으로.

### 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강보험

**김예찬** |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박선희** |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조업은 1년에 한번이고 화학약품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6개월에 한번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학물질 사용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신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장은 좀 달라요. 아니,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가 1조가 넘어요. 그런데 막상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 들어보면 건강검진 받은 적이 없다는거야. 이게 회사가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는거예요. 사실 본인이 2년에 한번 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건강검진으로. 그런데 보통 기숙사에 살다보니까, 통지서가 회사로 가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니까 연차 휴가를 안줘요.

김예찬 | 건강검진도 유급이니까 안주려고 하겠네요.

박선희 | 차라리 연차 휴가라도 주면 휴가 때 가서 건강검진이라도 받을텐데. 이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고, 만약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공장에 시정지시라도 제대로 내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일부 빼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 병원 한번도 안갔는데, 귀국할 때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료 돌려주냐고 물어봐요.

김예찬 |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내기만 하는 거네요.

박선희 | 그렇죠. 국민연금은 돌려줘도 건강보험은 안돌려주는거죠. 외국인 노동자들 건강검진 얼마나 하는지, 특히 취업자만이라도 좀 조사를 해야해요. 자료가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건강검진을 기한 내로 안받으면 사업장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게 시정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죠. 대부분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라서 그런지.

##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 체계가 필요해

김예찬 |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보통 산업단지를 이루고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나랑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정보교환이 좀 되고.

박선희 | 반월시화공단이 있는데, 그런 공단 형태로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반월시화공단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포나 의정부에 보면 시골에 어쩌다 하나씩 공장이 있는 곳들. 그런 곳은 정말 무법지대죠. 비자 없는 분들 많이 쓰고. 왜냐면 비자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안 지키면 고용센터 가거든요. 나 왜 제대로 안주냐, 회사 바꿔달라. 그런데 미등록 노동자들은 짝 소리 못하고 일하거든요. 그러다보니 더욱 상황이 안좋죠.

김예찬 | 그런 공단 근처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상담, 지원 센터 같은 곳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박선희 | 옛날에는 주로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지자체나 정부 주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위탁을 주는 경우도 많고. 사실 직원도 뽑고 통역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려면 개인 후원 받아서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요새는 외국인을 위해 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몇개씩 운영해요. 이분들이 귀화를 하고 싶거나, 비자를 받고 싶으면 점수제가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되어야 하니까. 안산에는 안산역 근처에 통역지원센터도 지자체가 하고 있고. 원곡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시흥공단에는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흥외국인복지센터도 있고. 외국인 수가 좀 된다 하면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김예찬 | 최근에 경기남부권에 외국인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래도 신경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선희 | 옛날에는 발로 뛰었죠. 요새는 페이스북. 외국인들은 페이스북으로 정보를 많이 봐요. 저희도 월 1~2회 통역 모아서 온라인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해요. 태국, 베트남 분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분위기. 물론 채팅 보고 답 해줘야 하니까 좀 복잡한 문제면 나중에 따로 연락을 달라고 하구요. 이런 방송을 하면 나라마다 막 100명, 150명씩 동시 접속 할 때도 있어요. 네팔 분들 같은 경우는 줌으로 해서, 고용 허가나 비자 문제 이야기 하고.

김예찬 |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구나. 하긴 직접 상담이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웹으로 뭔가를 하면 번역기도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네요.

박선희 | 네, 그래도 상담은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다가 문제 의식이 생기면 직접 만나서 더 깊게 상담을 하고. 산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외국인들이 다치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떻게 되는건가,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가. 그나마 사장이 “병원비 내줄게, 걱정마” 이러면 좀 나은데. 수술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싶고. 그렇다고 의사가 설명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 끝나면 어떻게 되는건가? 이런 엄청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담을 해야하는데, 최악의 경우 사장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거지. 또 수지 절단, 골절 이런 경우 비급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외국인들은 기본급이 낮아

서 일 될 때 휴업급여 최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업급여가 150만원인데 비급여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김예찬** | 수지 절단 같은 경우 수술 비용이 적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 병원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서, 빈민들이 병원에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병원에 통역이 상주해 있다거나, 아니면 산재 상담을 할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박선희** | 통역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국적만 많은건 아니라서 통역을 다양하게 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산병원에는 통역이 있대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던 외국인 노동자 분이 통역 도움을 받으려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사실 대학병원은 좀 예약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약 시간도 통역 출근 날하고 맞춰야 하니까, 막 예약이 한달 뒤로 잡히는거지. 그래서 알고보니 이 통역은 부자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이었던거죠. 다른 병원에는 통역이 있는걸 본 적은 없는거 같아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F6 난민 인정자가 아니면 사회복지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가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는 아니고, 개인 질환으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기관에 모금을 통해서 병원비를 깎아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보다구요. 그런데 이주민이 200만이 넘는 시대인데, 사회복지체계에 외국인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런 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긴급생계비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네요.

##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김예찬** |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코로나 때 긴급 재난문자라던가 이런 연락이 가잖아요. 한국어로 된 안내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박선희** | 따로 국적에 따라서 번역해서 문자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문자가 안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부 국가만 지원했을 수도 있고. 코로나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건 코로나 격

리했을 때 나오는 생계비 지원. 그건 비자 없는 사람들도 다 받기는 했어요. 재난지원금은 비자 있는 사람 일부만. 그래서 재난지원금 미지급 문제로 이주민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도 했는데, 인권위에서 기각 되었다 그랬던거 같아요. 사실 재난은 모두가 같이 당하는 거잖아요. 비자 없는 사람도 당하는건데.

**김예찬** | 그렇구나. 몰라서 못받는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경우가 많네요.

**박선희** | 그렇죠. 한국의 모든 지원 제도가 '국민'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아직 '국민'을 버리지 못하는거죠. 법적인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던가 하지 않는 이상 핑계 대기 좋은...

**김예찬** |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공장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거고.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렸나.

**박선희** | 코로나 초창기에는 공장이 문을 닫아서 해고를 당했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재난지원금도 못받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비영리 재단들 통해서 작게라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은 정말 의료가 어려워요. 건강보험이 안되니까. 건보공단은 일부 비자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안해주고. 비자 없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보건 기금으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지정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그 병원이 아니면 지원을 못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걸 모르고 다른 병원 가면 혜택 못받는거야.

**김예찬** | 산재보험도 지정 병원 문제가 있다고 들긴 했는데...

**박선희** | 산재도 지정병원이긴 한데 대부분의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치면 사장님한테 부탁하지 말고 원무과에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공단이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산재 보험 적용하니까.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서 그렇지,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는 별로 못본거 같아요.

**김예찬**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저희가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이

주노동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건데요, 국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런 건 좀 보장해줘야 한다,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이 이걸 꼭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선희 | 보통 교육 할 때 “일하면서 다치면 산업재해다”. “일하면서 생긴 병은 다 산업재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건 산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고 인정 받느냐.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 서비스 같은걸 좀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만약 누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불안하잖아요. 궁금한건 많은데,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고. 만약 사장님도 썩까, 그러면 페이스북 통해서 막 검색하다가 브로커에게 걸리는거예요. 예전에 손가락 잘린 분 산재 상담을 했는데, 이게 산재 등급이 13급이거든요. 더 올라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공단 실수로 14급이 나왔고, 내가 막 항의해서 13급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요새 법률사무소에서 브로커를 써서, 통역인을 잡아서 광고를 하는거예요. 브로커가 “너 우리 변호사가 잘하면 11급, 12급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꼬신거지. 그래서 착수금 500을 준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등급 올리는게 불가능한데, 외국인니까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브로커에게 넘어가는거죠. 500 날리는거지. 이런 경우는 뭐 한국인이라도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더 정보 제공을 잘 해준다면, 통번역을 지원해준다면 이런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최소한 산재 입원 환자만이라도, 치료 중인 환자만이라도 좀 연락을 해서 치료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거고... 이렇게 알리는게 중요하다는거죠.

김예찬 | 피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선희 | 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중한 장애가 1급부터 7급까지잖아요. 연금이 나오는데, 한국사람은 연금으로 나오지만 외국인은 다 일시금으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귀국할 때 일시금으로 받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한국인 국민연금도 주잖아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장애를 얻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충분히 일시금 말고 연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귀국해서 일시금 홀랑 날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적어도 선택권을 줘야지. ◆



#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서사가 필요하다

한겨레21 | 신다운 기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들의 기획취재를 빼놓을 수 없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해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보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동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러 산업재해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을 만나,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자 했다.  
.....

김예찬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신다운 | 저는 《한겨레신문》에 있다가 《한겨레21》이라는 주간지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로 노동이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왜 산업재해 보도는 짧은 기사가 많을까?

김예찬 | 산재 관련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신다운 | 사실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산재 기사가 두 세줄 정도만 나간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 속보가 뜨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이 지역 노동청에 연락해서 사업장 규모가 어떤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어떤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규직인지, 간접고용인지, 작업 당시의 공정이 어떠한지,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요. 만약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연락을 해서 이 공정에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노동조합에서는 사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공정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들을 확인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해당 공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측에 이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냐 물어봐요. 보통 회사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대답을 잘 안해주죠. 그럼 다시 노동조합에 연락해서 그동안 노조에서 해당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그게 잘 받아들여졌는지 파악을 해서 기사를 내구요. 그런데 보통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연락을 안받거나 하면 그냥 취재가 종료돼요. 그래서 두 세 줄 짜리 기사가 그렇게 많은거예요.

김예찬 | 고용노동청에서는 언론 취재에 대해 응답을 잘 해주는 편인가요?

신다운 | 어쨌든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고,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동향’ 자료를 받아요. 이걸 해당 노동청이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본청으로 올리는 보고서거든요. 그걸 받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구요. 근로감독관은 아무래도 피의사실 공표라는 논쟁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니까 거의 잘 안 얘기하려고 하죠.

김예찬 | 이런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나요?

신다운 | 사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고 수습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 하루에 두 명 꼴로 사고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고들에 대해서 따로 보도자료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안내 문자는 와요. 그 정도는 나름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예찬 | 제가 듣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 의견서 등의 자료 제공에 좀 엄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다운 | 네네, 맞아요. 재해조사 의견서를 받는데 시일이 훨씬 오래 걸리구요. 원래 중대재해에 대해 가장 여론이 결집되는 시기가 죽음 직후인데, 그때는 조사나 수사 때문에 거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고, 나중에 정보가 공개될 때 쯤에는 여론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재해조사 의견서 자체를 이전보다도 더 늦게 주고, 조사자의 견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김예찬 | 유가족들에게도 잘 안주려고 한다고.

신다운 | 국회를 통해서 운 좋게 받으면 다행인데,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들은... 아주 안주는 경우까지는 못봤지만 주는데 되게 시일이 많이 소요되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는거예요.

##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알 수가 없다

김예찬 | 또 궁금했던게, 산재 사고에 대해 기사를 쓸 때 ‘올 해 들어서 몇번째 사고’라던가, 최근 건설 사업장에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통계 정보들도 기사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신다운 | 그건 업종 따라 다른데, 공공기관은 ‘알리오’라는 공시 사이트에 재해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전력 김다운씨 사건 같은 경우 한국전력에서 공시한 내용을 카운트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에 확인을 하면 되는건데, 민간 기업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으니까 노동조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구요. 현대중공업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인데, 워낙 노동자가 많이 죽으니까 노동조합에서 473번째 사망자(2022년 4월 기준)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요. 그걸 회사에 물어보면 확인을 안해주거나, 모른다고 해요. 사고 하나 하나에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더라도 접근을 안시켜주는거죠.

김예찬 |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산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게 산재 예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다운 |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그 회사에 얼마나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여론을 결집하는데 중요하죠. 그리고 사고의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산재 사고들이 다 우발적이고 각자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되면 그냥 473이라는 숫자만 남는거예요.

김예찬 | 숫자만 딱 남는다?

신다운 | 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밖에 못 물어봐요. 추상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 왜 끼임사고가 반복되었나요?” 라는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힘들어지는거죠.

김예찬 | 고용노동부가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는 좀 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신다운 | 일단 기업 이름을 달고 산재 보도자료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구요. 기업에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니까. 업종별로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철강업계 안전보건 리더회의, 이런 행사가 있으면 노동부가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죠. 철강업종에서 그 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몇명인지. 그리고 여름철, 가을철, 이렇게 계절에 따라 산재에 경보를 올릴 때 가끔 통계가 나와요. 그래도 기업별로는 웬만하면 거의 안나와요.

김예찬 | 저희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공표 제도가 너무 제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도 한계가 많다고 생각해서 제도를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도자료로도 사고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신다운 | 연말에 한번씩 발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공개 제도가 있지만, 굉장히 소화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절대로 일반 시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 표

가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으로 만든 표라서. 예를 들어 2년 내 다발 사업장 목록이 있는데, 우리가 유형별로 기업을 알고 싶은게 아니라 한 기업 내에서의 흐름을 보고 싶다면 그 자료를 다 가공해야 하는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게 민주노총이 한 ‘올해의 살인 기업’이예요. 매년 민주노총이 데이터를 다 받아서, 기업별로 재조정하고. 지금 공표 자료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제각기 다 다른 기업으로 카운팅 된단 말이에요. 조선업 안에 사내 하청이 100개가 넘는데, 그게 다 개별 하청기업의 산재로 카운팅되잖아요. 정부의 자료가 정말 문제를 드러내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자료를 가공해서 나와야 되는데, 노동부가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불친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예찬 | 저도 이게 데이터 형태로 공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사업장명만 딱 공개하니까 이름 비슷한 기업은 구분하기 어렵고.

신다운 | 기업 중에서는 성지종합건설도 있고 성지건설도 있는데.

김예찬 |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신다운 | 지금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잖아요. 데이터만 잘 공개가 되어 있으면 기업의 추이도 볼 수 있고, 흐름도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든 데이터라고요.

## 고용노동부의 한계

김예찬 | 고용노동부가 왜 이렇게 공개를 할까...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신다운 | 정부가 기업 이름을 등판시키기에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정부 부처의 위상에 따른 문제도 있고. 명단을 공개한다는게 기업에게 망신을 줌으로써 규율하는 방식인 건데, 정부 부처가 결정해서 하기엔 좀 부담이 따르죠.

김예찬 | ‘올해의 기업살인’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올 해 자료를 안주려고 해서 갈등

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영향도 있겠지만, 정권 교체 때문인지...

신다운 | 정권과 무관하게 그런 흐름은 계속 있어왔어요. 산업재해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의 영역이 있는데,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정부가 나서는데 되게 어려워 하고. 취재를 할 때 보면, 어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업장이 과거에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 현대중공업에서 오늘 사고가 나면, 노동조합에서 확인해주는 473명 말고, 법원이 인정한 현대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그동안 몇건이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에 가서 검색해서 찾는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 관심이 빨리 식구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노동청에서도 자신들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긴 사건의 결과를 수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청이 현대산업개발 산재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종국의 결과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우리 청에서 기소의견 송치한 것에 대한 실제 기소율이나, 유죄 확정 판결을 같은게 나오잖아요. 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경찰이니까, 자기가 수사한 것의 재판 결과를 보고 다음에는 수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송치를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거예요.

김예찬 |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내용을 관리하잖아요.

신다운 | 그렇죠. 근데 노동부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럴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수사한 사건의 결과, 수사 기법의 문제, 앞으로의 수사 계획... 재판 결과에 비춰서 이런걸 고민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게 답답해 해요.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결과를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하니까요.

물론 노동부가 해마다 산재 다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는건, 그 명단을 가지고는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역 노동청별로는 일선 수사관이 자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보면 몰라요. 관리를 안하는거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산재 문제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니, 시민까지 갈 것 없이 내가 현 대중공업의 노동자인데, 우리 회사에서 작년에 동료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그래도 알 길이 없어요. 이미 여론이 소진되었으니 언론이 잘 보도도 안해주고. 아주 잘 가공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산재 다발 사업장 명단도 사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사실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결과가 어땠는지,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다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나와요.

지금 산재 다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해도 언론 기사로 나가기 힘들어요. 독자들에게 서사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한 끝에 산재 은폐 사업장을 봤어요. 사업장 중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고 은폐되었는지 그 과정을 서사로 복원을 해서 문제를 보여주자, 그리고 통계를 붙여서 기사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지방청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내용을 안 알려줘요. 이미 판결 결과가 나와서 명단 공표까지 한 정보인데도, 언론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는걸 노동부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더라구요.

이건 그냥 노동부가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부처의 위상을 생각해야 해요. 수사 한번 문제가 되면 기업한테 소송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로감독관들의 위상이 기업의 위상을 절대 못따라가고, 국가에서도 지켜주는게 아니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 연락을 해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마저도 이미 과거 기사로 보도된 내용만 확인해주더라고요. 그 디테일을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판결 결과를 모른다는거예요.

사실 산재 은폐가 되게 반복적인 범죄예요.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산재 은폐 사업장이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산재를 당했을 때 은폐를 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가 산재 은폐 사업장인지도 모르고. 공표를 해도 알려지지 않고. 실제로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메일이 왔어요. 내가 그 회사 다니는데 산재 은폐 사업장인지 몰랐다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내용들이 전혀 의미 있는 정보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지요. 심지어 해당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나 노동조합, 유가족 같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안

되는거죠.

## 사고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김예찬 | 미국의 OSHA나 영국 HSE 같은 경우는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뭘 위반했다 이런걸 다 볼 수가 있더라구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공개를 안할까.

신다운 | 공개를 아예 안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미 없는 정보로 만드는거죠. 한국처럼 행정이 발전한 나라가 산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건 또 숨겨진 의미가 있을거구요.

김예찬 |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워크넷에 구인공고가 올라오면, API로 따와서 기업의 5년 간 산재 사망 사고 현황을 띄워주는. 이 사업장에서 얼마나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직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하는 정보 아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신다운 | 그렇죠. 구직자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김용균씨도 처음 서부발전 하청업체에 들어갈 때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정보에 대한 제공도 제대로 안되고, 가공도 안되고. 채용 정보는 민간 기업의 수요가 있지만, 생명안전 정보는 구인자인 기업들이 원치 않는 정보다보니 계속 사장되었던 것 같아요.

김예찬 | 그래서 그런걸 제도화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지금 정보를 공개는 하지만, 연계가 안되어있잖아요. 임금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를 하는데, 그걸 가져와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알려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들은 구인공고를 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공표 조항이 생겼는데, 예전보다 정보공개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어 공표하고. 그나마도 1년만 공개하도록 했고.

신다운 | 그렇죠. 이걸 정말 사회가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중에서는 기소만 해도 공개하는 곳도 있는데.

김예찬 | 맞아요. 근데 우리는 형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심까지 다 거치면 2년, 3년 뒤에야.

신다운 | 한화에서 2015년에 폭발 사고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정보를 최근에야 공표했어요. 지금도 공표 명단 보면 가끔 2015년 사고 같은게 있어요. 이제야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시간 지난 걸 누가 보겠냐구요. 저는 단순한 숫자 보다는 중요한게 사고의 내용에 대한 공개라고 생각해요. 만약 기소한 내용을 공개하는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적어도 재해조사 의견서라던가, 요약 정보라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고의 내용을 거의 알 수 없잖아요.

형이 확정되어서 유죄가 나왔으면, 산재 다발 사업장 명단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한 두줄 정도라도 뭐가 문제인지 내용을 붙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산재은폐사업장-000(기업명)' 이라고 끝이에요. 범죄 사실을 모르니까 범죄 기업이라는 비판도 좀 추상적이고 힘이 없잖아요. 사고 났다는 사실만 알고 기업의 귀책이 뭔지 알 수 없는거예요. 그런 내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산업재해에 대한 서사를 복원해야

김예찬 | 최근에 또 SPC에서 사고가 나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기업 망신 주기를 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기업의 산재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기업들이 신경 안쓸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다운 | 그래서 제가 서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건의 데이터베이스 보다 1건의 의미 있는 서사가 중요해요. 서부발전이 김용균씨 이전에도 해마다 한 명씩 죽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신경을 안썼어요. 그런데 김용균씨 이후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서사를 촘촘하게 복원했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사로 받아

들여졌고, 그 이후부터 서부발전은 김용균의 회사가 된거예요.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쓸 수 없게 된거죠. 평택항 이선희씨, 구의역 김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여러번 있었지만, 구의역 김군 이후로 2인 1조라는 교훈이 생겼잖아요. 그런 서사가 없었으면 그냥 한 번의 사고로 남았을거예요.

이런 서사를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게 바로 노동부의 수사 내용하고 사법부의 판결문이에요. 저는 수사가 끝나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해조사 의견서가 되든, 조사관이 공개를 하든, 아니면 기업이 공개하게끔 하는 체계를 갖춰놓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목말라 있어요. 변호사들도 그렇고, 현장의 활동가들도 그렇고 대체 어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업장마다, 사고마다 다 다르죠. 간단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날 현장에 개구부가 열려 있었는데 안내표지가 없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근로자가 걸어가다가 추락했다, 이 정도라도 공개를 해줘야 해요. 또 나중에 형 확정되면, 법원에서 기업의 어떤 책임을 인정했는지에 대해 판결문 요약만 해도 돼요. 개구부를 닫아놔야 했는데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 정도라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 현장 관리자가 당일에 비번이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날 개구부가 열린 걸 신경을 못 썼고 거기에 근로자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판결문이나 재해조사 의견서 정도만 공개해도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대표이사의 잘못을 다 들춰내지 않더라도 이 날 무엇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정보들에 지금 접근이 안되고 있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해야 한다는 운동이 계속 되고 있다가 좀 소강 상태인데, 재해조사 의견서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조사자 의견을 빼고 공개하더라도 중요해요. 거기에 재해자가 평소에 그 업무를 했는지, 자신에게 익숙한 업무인지, 당일 몇시에 투입되었는지 이런 정보가 거의 다 나와요. 그게 그 사고의 관리적 요인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 과거 사고 분석이 예방으로 이어진다

김예찬 | 건설 사고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건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안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다운 | 건설업은 전체 사망만인율이 월등히 높은 업종이니까요. 그런데 비슷하게 만인율이 되게 높은 곳이 조선업인데, 조선업은 또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도 업종별로 되어 있고, 화학사고는 화학사고대로 또, 식약처가 따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되게 파편적으로 관리가 되어있어요. 또 기업별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주체가 고용노동부가 되든 기업이 되든 형이 확정되었을 때 판결문 공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도록 만드는게 진짜 문제예요.

김예찬 | 지금 판결문 공개를 하긴 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건번호를 알거나 하지 못하니까 검색도 용이하지 않다 이런 말이지요?

신다운 | 네, 시민들이 사안의 판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노동청이 종국결과를 일부러 안모으는게 아니에요. 형사번호에서 사건번호로 넘어갈 때, 그 사건번호를 수집 안해서 못찾는거예요. 그 정도로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본청이나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봐도 사건번호가 없다고 해요.

김예찬 |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없을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신다운 | 근로감독관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사건 중에 하나니까, 게다가 산업재해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다른 사건도 같이 맡으니까요. 물론 산업안전감독관이 따로 있지만 어쨌든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거죠. 이미 일어난 사고를 하나하나 수사하는 것만큼 중요한게,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한 분석인데 그 부분이 거의 안되어 있어요. 산업안전감독관 확충을 얘기할 때 수사 인력 확충의 의미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거죠. 그런 분석이 되어야 예방까지 갈 수 있는거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전수 조사 및 분석 보고서 같은걸 매년 연구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수사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수사한 당사자가 보는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내용을 받아와서 일종의 ‘흐름 연구’를 하는거라서. 자기가 한 수사, 우리 부처의 수사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반성하는게 아니라 ‘올해의 대법원 판례 태도’를 분석하는거잖아요. 수사 방향과 연계하기 위한 반성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게 별로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서 To Do를 만들어야

김예찬 | 최근에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여론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영역에서의 변화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민들이 가진 뜨거운 관심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신다운 |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 안에 있던 안타까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크게 결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수사를 잘 하고 처벌을 하는 법이고. 이번에 박상은씨가 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라는 책 읽어보면 되게 인상 깊은게, 사법 조사는 그냥 검찰이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조사는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보를 개방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한익스프레스, 구의역, 서부발전처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큰 사고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되지 않나? 라는 의식은 우리 안에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업도, 정부도, 시민사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구호만 남은 것 같아요. 무재해 운동 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근데 추상적인 구호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To Do가 필요하잖아요. 세월호의 To Do가 핵심자 처벌에 그치는게 아니라, 노후 선박이 바다에 뜨지 않게 하는 것, 원칙을 위반하고 운항하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To Do를 산재에 대해서도 발굴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산업재해를 멀리서 봤을 때는 안전보다 생산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통칭할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고 내용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비용을 우선시 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관심을 주지 않은 영역이거나 일부러 무시하던 영역도 있구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한 To Do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직을 바꿔야 하는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거고, 또 아차 사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던가. 대안이 다 다른데 지금 분석이 너무 안되어 있으니까 자꾸 추상적인 구호에 모이게 되는거구요.

한국 사회가 생산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문화라는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는 안된다!”에서 그치는게 아니고, 생산과 안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누구에게 얼마 만큼의 권위를 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이 안되었을 때 다음 방안으로 누구를 세울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김예찬 | 근데 지금 그 원인 조사도 제대로 누적이 안되어 있죠.

신다운 | 물론 그런 성과가 구의역 사고와 서부발전에 대한 몇백쪽짜리 보고서고,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 기록의 성과죠. 근데 그게 더 많아져야 해요. 일상적으로 더 많아져야 하고. 한 해에 800명이 죽는데, 그게 기록으로, 서사로 복원되는 사례가 1년에 두 건이 안되잖아요.

김예찬 | 그렇죠.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에도 접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만 가능한 것도 있고.

신다운 | 그 몇가지 사건들에서 왜 가능했냐면, 무작위로 선택된게 아니라 사건화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기초 정보가 더 많았어요. 그래야 취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사건을 봐도 기초 정보가 없으면 더 기사가 못나가요. 그걸 나갈 수 있게 하는 요소가 그 사건들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바로 노동조합이고, 그걸 사건화 하는 활동가들의 존재였는데, 모든 사건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노동조합 가입률도 낮으니까.

##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부족하다

신다운 | 예전에 전주희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관심에 비했을 때 산재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법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소통. 산재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이 논의가 아주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거예요. 위험의 외주화, 2인 1조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아주 조금씩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면서 아주 원초적인 산업안전 원칙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더 구체적이고 많은 원칙들이 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하는 날인데도 안전감독자가 쉬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감독자는 정규직이고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서. 조선소 물량팀은 휴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는 어버이날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버이날이 휴일이라 정규직들은 다 쉬니까. 이런 문제. 비정규직의 휴일과 안전감독자의 휴일을 맞추는 것. 이런 상식적인 To Do들이 더 나와야 해요. 사실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만한게 아니에요. 또 기계가 다니는 통로와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아주 잘 분리해야 한다. 지금도 분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선만 그어서 분리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지게차가 가다가 담배 피던 사람을 치고 가는 진짜 황당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40대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아이들처럼 놀려고 했는데 담배 피우려고 걸어가다가 지게차에 그냥 치어 죽었어요. 왜? 통로가 없어서. 이 통로가 왜 구분되지 않느냐, 통로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회적 교훈으로 남아야 해요. 매번 김용균씨 때 처럼 청와대까지 움직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되고, 언론이 그것을 바탕으로 보도하고. 시민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저는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해야할 일은 판결문, 재해조사 의견서 등의 자료를 가능한 많이 공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몫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재해조사에 많이 참여시켜야 하고. 또 노조가 기자회견한다고 해서 함부로 기업이 소송 걸고 이르지 못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많이 보장해야 해요. 또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노조 가입률이 10% 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대신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허락을 해줘야 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죠.

김예찬 | 사고가 일어나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노조가 못들어가게 하고, 아무 정보도 안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다운 |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법 과정이 사회적 소통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법 과정에서는 피고 권리가 보호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피고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전정보를 차단하는게 사법 과정의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칙만 강조해서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다 간섭, 장애물로 보이는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검찰이 모든 걸 다하도록 응원만 해야 하는거죠. 사법 처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조사의 창구를 열어줘야 해요. 어차피 정부에서 다 책임지지 못할거면, 근로자 대표가 현장조사에 입회하게 해주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든 해서 시민사회에서 백서나 책을 쓰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열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평택항 이선호씨 사고 중국 결과를 보면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 이렇게 끝나요. 사실 중국결과 만큼 중요한게 왜 사고가 일어났느냐예요. 사건 당시에는 많은 문제제기와 치열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재판 결과를 보면 그때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검증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주장은 채택되고, 어떤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는건데.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판결문에 안쓰면 무엇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는지, 어떤 주장은 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거나, 노동조합이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백서도 만들고 해서 '왜' 를 알 수 있을텐데.

##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김예찬 | 최근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의 기획 보도가 많아졌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언론사들이 산재 문제에 대해 잘 보도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신다운 | 그래서 기초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겨레는 산재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쓰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쓰려고 해도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더 기사를 쓸 내용들이 안나오는거예요. 여기서기 전화하고, 노동조합에 연락하고. 품은 업

청 들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오는 내용은 한 두 줄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취재 역량이 계속 쌓이니까 갑자기 산재가 터지면 저희가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뉴스(New+s)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New들을 계속 새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New에 해당할 의미있는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는데 기자가 그걸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초 정보가 더 공개돼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김예찬 | 언론사의 색깔을 떠나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문제라는 거죠?

신다운 | 네. 보수 언론이 확실히 덜 쓰는건 사실이지만, 평택항 이선호씨 사고처럼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져서 모두가 써야하는 그런 시점이 와도 정보가 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사고를 작성하고 다루냐 마느냐는 언론사의 선택이지만, 쓰고자 할 때도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언론사들이 안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거죠.

겨우 원고지 3매 짜리 기사를 쓰는데도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어요. 3매 짜리 팩트를 확인할 때도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니까 사측과 노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그럼 정보가 없으니 아예 못쓰는거죠.

김예찬 | 그렇겠네요. 산재 보도에 대해서도 편향이 생기겠네요. 사실 많은 사고가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에서 나는데, 그 경우에 기사를 쓰기 어렵네요.

신다운 | 하지만 그 둘이 연관돼 있긴 하죠. 왜냐하면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결국은 노조 없는 사업장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한 쪽의 사고라도 제대로 내용을 복원해서 보도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죠. 노조 있는 사업장이 대표로 싸우는 셈이죠. 물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민주노조가 아닌 경우도 있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내용을 너무 모르거나 하면 기사를 쓰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 사회적 소통이 없으면 기업의 스피커만 남는다

김예찬 | 산재 사고 말고 질병에 대해서도 민주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료 확보의



차원이 다르다고도 하더라고요.

신다운 |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라고 주장해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공할 여지가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것.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고 조사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 줄 것. 그 두 가지만 마련해도 산재 사고에 대해 훨씬 다양한 소통이 가능한데, 지금 안되는거구요. 이렇게 사회적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측의 소통만 남아요. 사측은 언제나 스피커가 있잖아요. 소통이 비어있는 자리는 빈 채로 남는게 아니라, 거기서 가장 힘센 사람이 스피커를 갖는거잖아요. 기업엔 홍보담당자가 있고, 기자들도 사안을 잘 모르면 소통이 가능한 기업 홍보담당자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그 서사가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김예찬 | 서사의 싸움이라는 관점이 엄청 흥미롭네요. 스피커를 기업이 쥐고 있으니. 정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 좀 싸움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신다운 |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 허가를 하고 그런게 필요하죠. 그걸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면 기업이 당연히 막겠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하는거구요. 다른 목소리들이 조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줘야 하고.

김예찬 | 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내가 산재 사고를 당한 노동자다, 아니면 유가족이다 했을 때 이 분들도 뭘 해야할지 모르고 정부에서도 안내를 잘 안 해주니까.

신다운 | 눈에 띄는 건, 영국은 산업재해 유가족에게 전담관을 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사 대응, 수사 진행 상황 같은걸 다 알려줘요. 관련 법령이나 재할 지원 같은걸 총체적으로 안내를 해줘요. 우리는 유가족이 바로 투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작년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대리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 서비스도 결국 개인이 검색하고 찾아서 해야 하는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유가족이 직접 다 찾아봐야 하는 구조예요. ◆

# 재해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구조를 바꿔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 권동희 노무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믿기 어렵다. 산재 은폐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 건수는 월등히 높은데,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사망사고는 은폐하기 어렵지만, 부상이나 질병은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인 권동희 노무사를 만났다.  
.....

**김예찬** | 산재 전문 노무사로 오래 활동하셨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쭙볼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느끼게 된 것이지만, 산재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겪는 알권리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권동희** |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재에 대한 증명 책임이 노동자와 유족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딱 “유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구요, 작년에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법리입니다. 만약 노동자와 유족들이 산재를 입증할 자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료가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이

걸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제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는거구요.

**김예찬** | 정보공개 청구도 공공기관에 하는거지, 사업장에 하는건 아니니까요.

**권동희** |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해도 사업장에 자료를 달라고 할 권리가 사실상 없는거구요. 사용자가 그걸 줘야할 의무도 없죠. 게다가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도 없는데, 증명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구조라는거예요. 이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거예요.

##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권동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조력할 의무를 가진다.”, “사업주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는 써있지만, 이걸 어긴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없어요. 사업주가 조력을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는거죠. 반올림을 비롯해서 안전보건단체들이 무수히 사건을 하고, 투쟁을 해도 삼성에서 서류를 받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업주가 조력해야 할 법률 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성을 해소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거죠.

**김예찬** | 그래서 반올림 같은 경우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거죠?

**권동희** | 사실 반올림 활동에서 다루는 직업성 암은 1년에 300여건 정도인 특수한 사건이구요, 대부분 산재는 사고잖아요. 산재 사고가 1년에 10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었다는게 너무 명확하니까, 사업주나 동료들이 어떻게 사고가 났고 그 원인이 뭔지 제대로 진술하고, 증거물을 주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고도 제대로 조력이 안되고, 증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김예찬** | 사업주가 이걸 제대로 돕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권동희 |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건데 여러 원인이 있죠. 옛날에는 공사 입찰 할 때 기피 점수에 산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피하기도 했구요. 아니면 삼성처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하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커지고 노동조합으로 뭉칠까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산재가 인정되면 도미노처럼 같은 유형이 인정이 될까봐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단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들의 인식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거지, 너가 그걸 왜 요구하냐”라는. 또 “우리 사업장이 왜 산재 다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써야 해”라는. 그냥 싫은거예요.

김예찬 | 정말 금전적인 이해관계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요인이 많다는거죠.

권동희 | 금전적인 문제는 사실 별로 없죠.

김예찬 | 어차피 보험이니까요.

## 불친절한 산재 인정 절차

김예찬 | 저희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산업재해 사고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를 더 잘 해야 한다,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건데. 일각에서는 공개가 잘 되면 좋지만, 오히려 산재 은폐를 유도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권동희 | 그건 어쩔 수 없는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거고. 산재를 은폐할 수록 개별 실적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보험료 경감도 있는거고. 가장 중요한건 사고든, 질병이든, 직업성 암이든, 뇌심질환이든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산업재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거예요. 또 대부분 산업재해를 처음 당하는거잖아요. 그럼 이걸 증명할 때 근로복지공단도 거쳐야 하고, 의학적 서류도 떼야 하니까 불편하고 힘들죠.

만약 아주 명백한 사고성 재해라면 병원에서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보통의

사고성 재해는 사고 자체를 은폐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산재 승인이 돼요. 96% 정도. 그런데 통계로는 사고성 재해가 10만 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산재 사고의 수치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도 전부 실제 사고의 1/3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수면 밑에서는 공상처리를 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산재가 아니라 건보로 처리한다는 거죠.

김예찬 | 말씀하신대로 사고는 은폐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겠지만, 핵심은 질병이잖아요. 자료를 확보하기도 더 힘들고.

권동희 | 질병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뇌혈관 심장 질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들이 증명 책임이 강해요. 서류 요구도 해야 하고, 증빙할 내용도 많구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이런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증빙하는게 어렵고 힘들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부분 대리인 선임 없이 하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도 많죠.

김예찬 | 대리인 없이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안내가공단 차원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권동희 |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될거라는 안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게 신청자들이 접수를 하면 어떤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접수하면 통지만 해줘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신청자가 알아봐야 해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 토탈 서비스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사건번호 입력하고, 주민번호 입력해서 조금 찾아볼 수는 있는데, 거의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죠. 사건 접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김예찬 | 아니,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같은게 접수가 되면 다 안내를 해주는데... 이건 고용노동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안하고 있는게 문제일까요?

권동희 |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마인드가 없죠. 그렇게 해야 할 책임도 없구요. 그냥 접수가 되었다, 역학조사 후에 판정을 통지한다 이 정도. 직업성 암은 역학조사 통지 후에도

1~2년이 더 걸리는데, 그 동안 안내가 안되죠. 가끔 사업장 조사 가니까 참여 할래? 이 정도. 간헐적으로 불친절한 통지만 하는거예요.

김예찬 | 만약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이나 판례 같은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으면 좀 나올텐데...

권동희 |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적인 지침이 산재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공개가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했던게 이 내부지침을 공개하라는 것하고, 산재 판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제가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권고안으로 내놓은 사항이기도 했구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걸 어느정도 수용해서 내부 지침과 지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산재 판례도 산재 판례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서 공개하게 된 거죠.

얘기를 좀 앞으로 돌려서, 산재 신청할 때 여러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심혈관계 질환이면 가장 중요한게 근로시간. 내가 얼마나 일을 했냐, 몇 시간 일을 했냐잖아요. 많은 기업에서 지문 인식해서 회사에 출입하니까 그 시간 자료를 떼주면 편한데. 근데 사업주가 그걸 쥐야할 의무가 없어요. 근로자는 내가 몇시간 일하는지도 증빙을 못하는 상황인거죠. 거기서 막혀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김예찬 | 자신의 근무 시간도 입증하기 어렵다...

권동희 | 어렵죠. 보통 회사들이 지문이나 카드 인식을 하는데, 내역을 안주면 어떻게 해요. 업무용 컴퓨터 로그인 시간도 그렇고.

김예찬 | 그 부분도 사실 공단에서 조사를 직접적으로 나가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권동희 | 공단 조사자의 재량에 달린 거죠.

김예찬 | 공단의 조사라는게 노동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럼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측에서 반박을 하면, 노동자 측에서 또 재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마

련되어 있나요?

권동희 | 그것도 시기에 따라 좀 달랐어요. 예전에는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 의견서를 받았어요. 산재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근데 그 의견서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개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좀 제도 개선이 돼서, 노동자가 달라고 하면 줘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일선 지사에서는 안주는 경우도 생겼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거죠. 사업주 의견서나 문답서 내용을 노동자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건데, 일선 지사에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안주는 경우도 있고.

김예찬 | 일반적으로 재판 같은걸 하면 서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권동희 | 그렇죠. 불균형한 구조인거죠.

김예찬 | 산재를 인정 받기 위한 절차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사실 절차 자체도 복잡하잖아요.

권동희 |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산재 인정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사실 상 서로 다른 기관이에요. 질병판정위원회는 공단 산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위원회 역시 근로복지공단 기구지만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하기 위한 곳이고,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에요. 여기는 유일하게 산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인거죠.

김예찬 | 그럼 그 기관들끼리는 서로 자료 공유가 잘 되는 편인가요?

권동희 | 자료 전달은 되지만 모든 전산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근로복지공단 기구인 질병판정위원회나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전산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요. 만약 어떤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서 MRI 사진이 담긴 CD를 제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는 PACS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

요. 그런데 재심사는 완전히 별개예요. PACS 시스템으로 공유가 안되니까, 노동자가 다시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해요. 재심사위원회에서 저 같은 위원들이 회의를 들어가면, 심사관들이 별도로 자료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따로 보내줘야 해요.

김예찬 | 당사자 입장에서 재심사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겠네요.

권동희 | 물론 서류 같은건 복사 해서 보내주는데, 전산 자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재심사 과정에서 따로 살펴봐야 해요. 또 청구인 입장에서 중요한게, 각 지사에서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지, 사업장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잘 받아낼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만나야죠.

모든 담당자들이 자료 요구 잘하고, 조사 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노무사 쓸 필요도 없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제대로 조사를 안하는 경우도 많고. 자료 요청하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데 또 문제인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배 짜라고 버티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깎해야 과태료인데, 그렇다고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요새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노동자 주장하고 사업주 주장이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 동료들을 찾아서 진술서를 받아내야 하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야 회사 눈치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고.

## 자료 요구의 권리가 필요하다

김예찬 | 어쨌든 자료를 확보하려면 공단을 끼고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회사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걸 어긴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역시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하는게 좋을까요?

권동희 | 당연하죠. 예전에 한정에 의원실에서 법안을 내긴 했는데 유야무야 됐구요. 각 사건마다 규정상 공단이 조사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목록이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자료 목록은 노동자나 유족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김예찬 | 그래서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안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하겠구요.

권동희 | 일단 과태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해요. 과태료가 100~200만원 수준인데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냥 돈 내고 치우죠. 또 어떤 사건이 제일 어렵냐면, 사업주가 교묘하게 배 짜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데, 업무 중에 스트레스 줄 일 없었다고 일관되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차라리 화학 물질로 인한 암, 이런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나 외부적인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성적인 자료는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 어느 정도 협조하는 측 하면서 결정적인 자료는 안줘버리면, 조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조사 안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데, 판정위 가도 이길 방법이 없죠.

김예찬 | 요새 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일 많은 질환들인데 오히려 인정 받기 어렵겠네요.

권동희 | 그래도 지금 2/3 정도는 승인이 되고 있어요. 뇌심혈관계는 36% 정도 되고. 오히려 직업성 암 승인률은 높아요. 한 60% 이상은 승인이 될거예요. 작업측정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공단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실한 자료가 많고 조사도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폐질환연구소 같은 곳에서 전문 조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충실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 공단 담당자한테만 맡겨지는 경우엔 부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사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별진찰을 통해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질환, 뇌심혈관, 근골격계도 그렇고 직업성 암도 그렇고. 자사에서 조사하는 질 보다는 특별진찰로 조사하는 질이 더 높아요.

김예찬 |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권동희 |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직업환경 의사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것도 좀 문제긴 하죠.

##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직업성 암

김예찬 | 얘기해주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노동자들이 내가 산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하잖아요. 과로도 일상적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입증할 자료를 모으려는 생각도 안할거고. 오히려 무슨 위험 물질을 다룬다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들이 더 산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서비스직군 보다 중화학공업 종사자가 더 산재에 대한 인식이 높다거나.

권동희 | 뭐 직업성 암 같은건 굉장히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다보면 이쪽 사람들도 인식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포스코 사람들 상담을 하더라도, 코크스 공장에서 30년 일 하면서도 내가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깨지고 있는 거고. 우리 나라에 직업성 암 사건이 많아봤자 이제 300~400건 정도라서.

김예찬 | 그래도 최근에 급식실 노동자 분들 직업성 폐암 문제 제기도 있고 하던데요.

권동희 | 그래도 확 올라가진 않아요. 통계상 300건 내외라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년 전에 금속노조에서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집단 사건을 했는데, 그때도 200건 정도 되었으니까.

김예찬 |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거군요.

권동희 | 그때도 집단으로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을 했고, 급식 노동자들도 영역 상 특수한 사례가 나왔으니까 다 조사해보자고 하는거고. 아직 전체적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엄청 높아져서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통계적으로 4000명은 직업성 암환자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300명 수준이니까요.

어떤 선생님은 실제로 9천 명 정도는 직업성 암 환자가 있을거라고 봐요. 전체 암 환자의 3%가 직업성 암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제 생각에도 적어도 4천 명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암에 걸려도 이게 직업성 암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지 않은거죠.

## 정보불균형이 가져오는 폐해

김예찬 | 금속노조나 조리실 노동자 사례를 들어보니까 노동조합이 이런 사례 발굴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노동조합이 없는 업종에서는 더 발굴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권동희 | 더 안되어 있죠. 잠복기가 길기도 하고, 만약 산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료 제공을 제대로 안한다거나, 정보 불균형이 있고. 질병판정위원회 가는 질병 사건들은 사업주들이 이상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근로자가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사건 끝나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나중에야 주는 경우도 있죠. 뒤통수를 맞는거죠.

김예찬 |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나중에야 공개한다는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니까 원칙적으로 바로 공개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권동희 | 판정이 끝난 뒤에야 줘요. 그래서 판정위에서 불승인이 났어요. 그럼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신과 관련한 불승인 자료를 달라고 청구하면, 공단에서는 너가 받고 싶은 자료를 특정 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도 모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드는 서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특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잘 주는 사람도 있고, 잘 안주는 사람도 있죠. 사실 핵심적인 자료들이 많거든요. 사측이 낸 자료도 있고, 공단이 찍은 동영상이나 확보한 서류도 있고. 조사한 문답서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받는거예요. 이 사건을 많이 해본 노무사들을 쓰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판정위원회에는 판정서가 있고, 회의 자료에 심의안이 있고. 위원별 심의 의견이나 조사 자료 등이 있는데, 지금 공개하는건 판정서랑 위원별 심의 의견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심의 의견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4대 2냐, 5대 2냐, 3대 4냐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자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판정서만 달라고 하고. 공단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거죠.

김예찬 | 그러면 산재 많이 해본 대리인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 살면 더 어렵겠네요. 대도시야 노무법인도 많지만...

권동희 | 이런 정보불균형 속에서 사람들이 나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불법 브로커를 만나는거예요. 내가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산재 브로커들에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비밀비재해요.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예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다 있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김예찬 | 변호사나 노무법인 찾아가면 돈 많이 드니까 내가 대신 처리해주겠다 이런건가요?

권동희 |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산재 인정되면 나중에 15% 달라,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고 돈을 받는거죠. 앞서 얘기했듯 사고성 재해는 96% 승인이 되지만, 막상 사고 당한 입장에서는 다 처음이고 힘들잖아요. 승인이 될지 안될지. 그러니까 브로커가 와서 다 처리해주고, 나중에 수수료를 달라 그러면 말기는 사람 많죠. 사실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산재 이후에 어떤 급여가 있고 혜택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을 하고,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꽤나 큰 돈이 나가는거거든요. 특히 장애가 남거나 그러면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을 얻는거죠.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상황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산재 신청하는지, 어떻게 급여가 나오는지, 자기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꺼서 신청서 한 두 장 넣어주고 나중에 1천만원 가져가는거죠.

김예찬 | 와... 아니, 그러면 이거를 공적 영역에서, 정부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마련해서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한국만 없는건가요?

권동희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게 노무사 제도가 있는데, 국선으로 대리를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선 노무사 제도는 있긴 있어요. 노동위 사건에서 해고나 체당금 사건에는 국선 노무사가 있어요. 그런데 산재는 없어요. 산재에도 이걸 도입하자고 할 때, 노무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기득권을 쥔 노무사회 같은 곳에서 자기들 밥그릇 줄어든다고. 그래서 제가 산재에도 국선 노무사 도입하자고 했다가 엄청

공격 받았죠. 일반 노무사들한테 산재에도 국선 노무사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그 얘기하면 다 욱할거예요. 돈의 문제니까.

김예찬 |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 정보공개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주는 제도가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에서도 안되는거예요?

권동희 | 산재 신청 자체는 안되고, 소송만 대리해요. 아시다시피 일정 기준 이하만 대리를 하는거고...

김예찬 | 그럼 어쨌든 노무사 찾아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근데 사실 솔직히 시민들이 노무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권동희 | 모르죠. 또 정보공개 얘기를 하자면, 산재는 굉장히 어렵고, 협소하고, 다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되는거예요. 알권리 3법 같은걸 개정하자고 하지만... 그거 한다고 산재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겠죠.

##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김예찬 |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있네요. 노무사님이 쓰신 글 보니까 노동조합에게 산재 신청 권한을 주자, 이런 글도 있던데. 그것도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거죠? 노동자들이 직접 노무사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권동희 | 지금도 사실 노동조합이 잘 하는 곳은 신청서 만들어주고 자료도 확보해주고 다 해요. 대신에 판정위원회 문 앞에서 딱 막히는거죠. 노조 담당자가 판정위원회에 같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회사는 인원 제한 없이 판정위원회 들어가서 진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측에서 대표이사가 판정위에서의 진술 권한을 인사팀장한테 맡겨요. 그럼 인사 과장, 인사팀 대리, 또 노무사 선임도 해서 4명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법률상 대리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무에서 노동조합 상근자라도 도와줬어도, 같이 들어갈수가 없는거예요.

**김예찬** | 그러면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있는 노무사를 통해서 판정위만 같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마치 재판할 때 공판 검사 따로 있듯이?

**권동희** | 그럴 수도 있구요.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들어가서 다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제가 자문하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 노조에서 자료 다 만들어주고, 제가 검토한 다음 노동자가 직접 들어가요. 이게 제일 돈이 안들죠.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회사측이 마음먹고 자료를 안줘버리는건데, 그럼 정말 힘들어져요.

**김예찬** |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근로자 대표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노동조합이 사측으로 부터 자료를 받도록 강제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권동희** | 작업 환경 측정 결과라던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있지만, 어떤 자료를 노동조합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된 건 없어요. 뭐 법에 PSM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김예찬** | 그럼 노동조합이 있으면 자료 확보가 쉬워진다는게, 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힘의 문제인거죠?

**권동희** | 힘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작업환경지침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어요.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조합에 만약 전산 시스템 관리하는 조합원이 있다, 아니면 노동조합이 힘이 세서 회사에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 확보를 할 수 있는거죠.

**김예찬** | 노동조합에게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주는게 방법일 수 있겠네요. 노동자 개인에게도 줄 수 있을거고.

**권동희** | 지금의 시스템 상 봤을 때는 노동자 개인이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긴 어렵죠. 내 사업장에서 소음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개인

이 가지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노조에 제공할 수는 있지만. 노조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 이러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퇴직을 했는데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 이러면 사업자가 안주려고 하죠. 그럼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를 해야하는데, 거기는 또 사업주가 주지 말라고 하면 잘 안줘요. 심지어 30년 간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지청에서 보관을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사업장에게 물어보겠다고 해요.

**김예찬** | 그럼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안주려고 할거고... 노동조합 중에서 좀 힘이 있는 곳들이 자체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권동희** | 자체적으로 하긴 어렵고, 사업장에서 측정 기관을 선정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게 가장 좋은 곳이구요. 노조가 요구하는 곳으로 기관이 선정되는게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한 개입의 여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곳을 채택하는게 두 번째고. 가장 나쁜건 회사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측정 기관 뽑는거고. 더 문제는, 측정을 안하는 곳도 많아요. 작업환경 측정이 제도화되어있지만,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걸 얼마나 잘 하겠어요? 일단 돈도 없어요. 그래서 측정을 안했는데, 만약 내가 소음에 대해서라던가, 아니면 직업성 암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난감하죠. 아예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 권리를 인식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김예찬** | 결국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지는 구조 자체가 문제네요. 만약 이걸 바꿀 수 없다면 자료 요구의 권한을 노동자들이 가지게 중요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권동희** | 그래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김예찬** | 안전보건공단 혁신안 계획 같은걸 보니까 중소 사업주들을 위해서 안전 관련 정



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던데.

권동희 | 글썽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걸 볼 여유가 있을까요? 담당자도 없을텐데...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산재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직업환경연구원.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있구요. 넓게 보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또 산업안전공단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구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생산하고, 작성하는 산재 관련 자료들, 정보들이 서로 다 공유가 되고 있냐, 저는 안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 요인을 찾거나, 작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에서 유기적인 협업이 안되는거예요.

이게 사건을 하다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작업 환경 측정을 쫓았다면 이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을거고, 만약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산재가 생기면 그 데이터가 다시 고용노동부로 가서 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분석이 된 다음 안전보건공단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이 특별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거구요. 노동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의식과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어렵죠. 그냥 한국에 와서 사업장 배치 받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니까 많이 죽고 다치죠. 또 산재 같은 사회보험 제도의 영역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불법체류자들은 더더욱 들어오기 어려운거구요.

김예찬 | 사실 저도 이제까지 일하면서 산재와 관련한 교육들을 받아본 기억은 없거든요.

권동희 | 그렇죠. 최소한 내가 일하는 곳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또 거기서 나를 방어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 교육이 없잖아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내용이 그런거고. 현실에서는 사인 받고 치우는 문제거든요.

김예찬 | 그런 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권동희 | 가장 좋은건 학교에서 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거죠. 서유럽에서 초등 교육

과정부터 단체교섭 교육 같은걸 하듯이, 한국에서도 초중고에서부터 노동안전과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게 제일 좋죠. 일터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거나, 실습생이 위험한 작업에 배치 받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무엇보다도 한국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터부시하는 인식이나 문화가 있으니까, 청소년기 부터 노동인권 교육으로 그런걸 깨뜨려야죠.

김예찬 | 어차피 다 돈 벌려면 일하고 살아야 하는데. 저도 활동하면서 노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거든요.

권동희 | 사실 기회가 없죠. 노무사들도 시험 볼 때는 산재 잘 공부 안해요. 시험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직접 사건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김예찬 | 그래도 지금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권동희 |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라는 틀에서 다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죽는 문제. 사실 죽지 않더라도, 죽는 것 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 산재 피해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김예찬 | 그런 문제를 가시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 재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

권동희 | 올해 여름에 한겨레에서 청년 중장해인에 대해 기획연재 기사를 했어요. 그게 산업재해의 적나라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겨레 '살아남은 김용균들 187명') 산재는 사실 신청해서 승인된다고 다 끝나는게 아니라, 그 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거예요. 직업성 암 같은 경우 신청해서 승인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2년이 걸려요. 승인이 받은 후에는 2년 동안 내가 돌아다녔던 병원을 다시 한번 다 가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를 해야하니까, 소견서 다 받고, 영수증 다 떼고, 그렇게 청구를 해야해요. 그 다음에도 진료계획서를 낸다거나, 휴업급여 청구를 하고, 그것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구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면 다시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도 암센터

에서 진료 받다가 산재 승인 됐는데, 암센터에서 튕겨 났어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특히 정신과가 심해요. 대부분 동네에 있는 정신과 의원들이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거든요. 실컷 3~4년 동네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으면서 산재 신청을 한건데, 병원 옮기지 않으면 돈 못준다,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산재로 죽거나 장애가 생기면, 비급여 항목도 많아서 힘들고. 사업주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김예찬** | 합병증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권동희** | 그런 것도 추가 상병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산재가 승인됐다고 다 끝나는게 아니라, 그 후에도 지난한 고통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노동자들이 알아서 다 해야 하는거예요. 공단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김예찬** | 아니, 그럼 국가는 뭘하고 있는거죠?

**권동희** | 승인해주고, 청구하면 심사할 때 돈 준다.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스탠스죠.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거예요. 그래서 산재 승인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나 재활도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거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싸운건 주로 왜 승인 안해주냐, 왜 사업주가 조력을 안해주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 이후의 과정도 봐야죠.

## 편견을 깨는 의사들이 필요해

**권동희** | 또 의사들의 문제도 있어요. 직업성 암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게 산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산재 신청서 쓸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내가 써주면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의사들이 보통 병과 직업과의 관련성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편견이 산재 신청이나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

문 의사 회의에서도 그렇고. 의사들이 꼭 끼어 있으니까요.

의사들 중에서도 물론 직업환경의들이 있지만, 보통 임상 의사들은 직업환경이나 노무사, 변호사들하고 인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나는 과학자니까 의학적인 인과 관계만 딱 본다는거죠. 뇌종양이 그냥 생길 수도 있는건데, 왜 꼭 산재라고 보냐. 백혈병은 가족력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유해물질이 원인이라고만 보냐. 이런 마인드가 적지 않아요.

**김예찬** | 그런 문제는 의대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최근에 보니까 성소수자 건강권 문제를 서울대 의대에서 교육을 시작한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직업환경의가 아니더라도 교양 수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권동희** | 네, 의사들이 정말 중요한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들어오는 의사들은 여러 산재보험이나 사회보험, 직업병 판단 등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권고하고 있어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요. 서로 너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산재 보험이 뭐고, 사회보험 영역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을 심어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수율은 별로 높진 않더라고요. 30% 내외 정도인가.

**김예찬** |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이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동희** |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상당수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 작성할 때 들어간 이야기에요. 그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

# 유족에게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 나라

김용균재단 | 김미숙 이사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김예찬 활동가

.....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기업은 사고를 축소하려 하고, 정부는 속시원하게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 누구보다 황망한 처지에 놓인 유가족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머리띠를 동여맨 투사가 된다. 유가족들이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듣기 위해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활동가로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김미숙 이사장을 만났다.  
.....

김예찬 | 저희가 일단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들의 명단이 너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찾을 때도 그 직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미숙 | 우리 아들(고 김용균씨)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김예찬 | 그렇죠. 서부발전도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비슷한 사고도 있었잖아요.

김미숙 | 그런 중대재해는 매해 있었죠.

김예찬 |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직자들도,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다 보니까 알게 된게, 그냥 산업재해와 관련한 분야 전체에서 정보공개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되고 있더라고요.

김미숙 | 맞아요. 기록을 안내놔요.

김예찬 | 저희가 그래서 여러 전문가 분들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용균재단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용균재단이 지금 유가족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거죠?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김미숙 | 저는 재단 설립하면서 한 3년 정도 다지기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사업을 잘 하려면 재단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경써서 후원 활동도 많이 하고, 연대 활동도 하구요. 저희 재단이 목표로 하는게 비정규직 철폐,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유가족 지원이거든요.

김예찬 | 그럼 혹시 산재 피해자 유족 분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나요?

김미숙 | 네, 상당도 하고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함께 해결하기도 하구요. 저희가 활동가가 저까지 세 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전국적으로 산재는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대응을 하진 못하고, 연락이 오는 것들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대책위를 전신으로 재단 설립을 하게 된거니까, 운영위원 분들도 다 그렇게 활동을 하던 분들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같은 유가족 입장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활동도 하구요.

## 재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회사

김예찬 | 사실 저는 처음에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그 대응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유가족들에게 안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미숙 | 일단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 불리한건 안하려고 하죠.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만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처음 발견한 사람이 회사에 먼저 연락하라는거, 그 다음 원청에 연락해서 이야기하는대로 사고 처리하라는, 그런 절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야 유족에게 연락을 한다 이정도.

저같은 경우도 처음 소식 듣고 가니까 하청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와서 보험 들어놓은게 있으니까 잘 처리해주겠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김예찬 | 왜 사고가 났는지 이런건 이야기 안하구요?

김미숙 | 전혀. 그냥 용균이가 너무 착하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한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책임을 넘길려는거죠. 용균이 잘못이다, 이거잖아요. 유족 처음 만나서 그렇게 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용균이 동료들이 보이길래 사측이 안보는 곳에 데리고 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사고가 난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회사가 용균이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죠.

김예찬 |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에서는 어떻게 된건가요?

김미숙 | 제일 처음 연락이 온 곳이 회사가 아니라 경찰이에요. 사고가 났으니까 오라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얘기도 안해줬어요. 가족인지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안의료원부터 갔다가, 경찰서에 갔죠. 그러니까 아들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얼굴에 새까맣게 탄이 묻어 있는 상태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잖아

요. 용균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를 닥달하는거예요. 왜 못 알아보냐고. 그래서 내 아들 같지만 얼굴이 새까매서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아들 보러 병원 지하로 갔죠. 머리카락, 피부결 만져보니까 아들이 맞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눈물도 안나오는 거예요. 꿈인지 생인지... 그래서 얼굴 말고 다른 곳을 보려고 막 들춰보려는데 병원에서 막더라고요. 아무 말 못듣고 왔냐고. 들은게 없다,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들춰보지 말라고, 어머님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이라도 잡아봐야 겠다고 하니까 막 끌어내는거예요. 문도 잠그고. 그래서 통곡하다 지쳐서 1층으로 올라가니까 바로 하청 이사가 그런 말을 한거예요.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김예찬 | 그 얘기를 듣고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 이게 회사가 뒤집어 씌우려는거구나 생각하셨군요.

김미숙 | 네, 용균이 잘못이 아니라는걸 안거죠. 그럼 사고가 왜 났냐, 어떤 요인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형사가 아니니까 뭘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 현장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엄마로서 자식 죽은 곳에 절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일하는 현장도 발전소라고 국가기밀이라고 출입도 못하게 해요. 아무 것도 밖에 못나오게 하고, 밖에서도 안보이게 차단해놨는데... 그래도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해서 나중에 조사할 때 가보니까 이미 물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도 현장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예전에 용균이가 일 할 때 사진을 실수로 보낸게 있어요. 밤인데 배경에 반짝반짝 가루가 날리더라고요.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는데, 탄 가루였던거예요. 그렇게 분진이 많이 날리고, 군데군데 무덤처럼 낙탄이 쌓여있고. 그런 곳에서 용균이가 균열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탄 끄집어 내고 이런 점검 업무를 했던건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비참했죠. 용균이가 힘들다고 하면 회사 생활하는게 원래 쉽지 않다, 힘들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렇게 열악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가보니까 물청소를 해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아무도 못건드리게 하잖아요.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증거를 찾는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물청소를 해버려서 다 없앴다는건, 회사가 뭔가를 감추고 있구나, 이

걸 찾아내야겠다, 이런 각오가 더 확실히 생겼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컨베이어벨트 물림  
점에 회전체가 엄청 노출이 되어 있더라구요. 딱 보니까 그게 사고 원인 같더라구요. 컨베  
이어벨트하고 회전체에 가까이 가야지만 점검을 할 수 있는 환경인거예요. 거기 개구부라  
고, 낙탄을 보고 끌어낼 수 있도록 뚫어놓은 곳이 많아요. 근데 사고 났던 지점은 안에 머  
리를 집어 넣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곳이라구요. 문서 지침을 보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온거예요.

그런데 재판에 가니까 회사에서는 그 안에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일을 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구요. 또 현장에 CCTV 카메라도 없고, 사건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다, 왜  
죽었는지 우린 모르겠다 이러는거예요. 아니, 2인 1조로 일하도록 규칙이 있는데 그것도  
안지키고, CCTV 안단 것도 자기들이고, 그러면서 공항에 있는 캐리어 운반 컨베이어벨트  
만큼 안전하다 그러더라구요.

김예찬 | 회사가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한거네요.

## 연대의 힘으로 가능했던 싸움

김예찬 | 그럼 회사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던건가  
요? 처음부터 노동조합하고 협력을 했던건가요?

김미숙 | 빈소에 처음 하청 이사가 왔었고, 그 다음 공공운수라는 명찰을 단 사람들이 왔  
어요. 저는 사실 공공운수가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운수업하는 곳인가? 했죠. 그런  
데 명함을 주면서 노조라는거예요. 근데 우리 제부가 이런 노조 활동을 했어서, 전화를 해  
서 물어봤어요. 공공운수 아무개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믿어도 되는 사람이나, 그러니  
까 자기도 이쪽 소속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래도 처음에는 믿음이 안갔  
어요.

김예찬 | 처음부터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김미숙 | 제가 회사 상대로 혼자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힘은 필요하고. 마침 제  
부가 공공운수가 괜찮다고 하니까 약간 믿음은 가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아침 저녁  
열리는 노조 점검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한거예요. 먼저 노조에서 유족들이 언제든 와서 회  
의 참관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전문적인 용어가 많으니까 무슨  
제주도 방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며칠 회의 들어가다보니까 귀가 조금씩 열리더라  
구요. 줄임말이나 모르는 단어 물어보고, 노조가 투명하게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공유  
를 해주니까 믿음이 가기 시작한거죠.

김예찬 | 그렇게 노조에서 결함을 하게 되었던거군요. 사실 처음에 사고 알려졌을 때는 김  
용균씨가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원래 노동조합 소속인 줄 알았어요.

김미숙 | 네, 들어간지 3개월도 안된 애가 피켓 들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노동조합 가입도  
안한 애가 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공공운수 쪽에서는 피켓을 들  
고 사진을 찍었다는건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  
고 합류를 한거예요. 처음에 기자들이 와서 조합원이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 잘 모르  
니까 조합원이니까 노조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거 아닌가요? 그랬죠.

김예찬 | 처음부터 기자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했나요?

김미숙 | 네, 뭐 저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인터뷰 대응을 했어요. 아, 조중동은  
빼고. 이상하게 쓰는게 많으니까.

김예찬 | 생각을 해보면 유가족 입장에서 정신이 없는데 언론 인터뷰에 다 호의적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김미숙 | 저는 일단 공공운수가 언론 대응을 도와줬어요. 좀 나쁜 기사를 쓰진 않을 만한  
기자들을 소개시켜줬고. 인터뷰 엄청 많이 했어요. 방송 인터뷰도 하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나중에 태안으로 기자들이 다 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다 같이 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김예찬 | 참 너무 슬픈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노동조합이 초기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네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엔 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거구요.

김미숙 | 네, 저는 그런 분들도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같은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겠어요.

김예찬 | 네, 따로 도움 받을 곳도 없으니까요.

## 입증 책임을 재해자가 지는 문제

김예찬 |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되었고, 지금 보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론이 어떤거 같으세요?

김미숙 |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때 여론조사 하면 국민 72%가 찬성을 했거든요. 기업이나 정부는 좀 반대 입장이었고. 그걸 시민들의 지지와 압력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되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건 시민들의 인식을 많이 높였다,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다는거죠.

김예찬 | 특히 사망사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사고나 질병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인식의 폭이 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미숙 | 회사에서 그냥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노동자 분이 일하다가 추락해서 진짜 죽다 살아났는데, 산재 신청을 못하는거예요. 왜그러냐고 했더니 이 업계에서는 산재 신청했다가 나중에 갈데가 없다는거예요. 기업들이 자기들 이미지의 문제도 있고, 돈 때문이기도 하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자기들 평가 등급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성과급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은폐를 많이 하죠. 어쨌든 사망 사고, 죽음은 은폐할 수 없지만 죽지 않더라도 정말 수명만 연명하는 그런 큰 사고도 있잖아요. 이 경우엔 은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

어요. 사고가 났을 때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자칫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 때 보고를 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좀 법망을 피해서 산재 인정 안해줘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구요. 이렇거면 아예 따로 신청을 받는게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자동 적용하도록 바꾸면 좋겠어요.

김예찬 | 먼저 보험 적용부터 하고, 나중에 산재 관련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확실히 낫겠네요. 어려운 신청 절차도 줄어들고, 은폐도 적어질거고. 지금은 기업들이 자료 제공을 안해줘서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김미숙 |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안에 인과 관계 추정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입법 과정에서 그게 아예 거론도 안됐잖아요. 만약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불이 난다거나 하면 회사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산재도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김예찬 | 왜 노동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김미숙 | 맞아요, 노동자가 죽으면 유족이 뭘 알겠어요. 회사가,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그런데 유가족은 회사 들어갈수도 없고, 들어가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무 한정적이고. 지침, 문서 이런것도 회사가 다 가지고 있고. 증거 은폐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니 유가족이 경찰도 아니고 수사 해본 경력도 없는데 어디까지 뭘할 수 있나... 처음엔 이렇게 당황하기도 했어요.

만약 그때도 지금 알고 있는걸 미리 알았더라면, 현장 출입할 때 폰 카메라로 다 찍어서 증거라도 좀 남길걸... 그냥 가서 보고 온게 다예요.

##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김예찬 |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보니 영국 같은 곳에서는 산재 유가족에게 전담 직원을 붙여서 계속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런게 없으니까 산재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눈 앞이 캄캄한데... 저번에 다행히 김용균재단에서 '산재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아 산재를 당하면 이렇게 해야하는구나 싶었어요.

김미숙 | 네, 도움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매뉴얼이 당연히 이미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는거예요. 그럼 재단에서 이걸 만들자, 그렇게 한 것이구요.

김예찬 | 매뉴얼보니까 현장 조사시에 유족이나, 아니면 유족 측 전문가 참여 요구를 하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김미숙 | 네, 용균이 때도 경찰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다 했지만 사실 사건조사가 제대로 안되었고,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회사는 당연히 자기들 유리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 안으면 조사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족이 원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사건을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용균이 때는 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간 사건 조사를 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혔고, 그 결과 업무수칙 부터 문제가 있다. 성실하게 일할 수록 위험한 사업장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원청은 그냥 하청을 준 일이니 책임도 권한도 없다고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책임에 구멍을 내고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근데 서부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그럼 사기업들은 얼마나 더 난리 날까요?

김예찬 | 김용균 사건 때는 열심히 투쟁을 해서 특조위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사고 마다 특조위가 구성되지는 못하는거니까. 처음부터 조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재해 조사 의견서들을 좀 봤는데 진짜로 유족이나 유족 측 전문가가 동행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회사 측 사람들, 동료들 의견을 물어서 반영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라 하더라도 회사에 회유가 되면 증언에 한계가 있을텐데... 그래서 유가족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김미숙 |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처참한 상태인데... 유족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게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거든요. 유족들이 떠난 이에 대한 충

분한 애도를 할 시간을 가진다고 보다는, 경찰 마냥 자료 찾으러 쫓아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말이 안되는거예요.

더 큰 문제는 유가족한테 그럴 권한도 없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고. 저는 예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우리를 위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대해보니까 아니예요. 기업 편인거예요.

어떤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정부나 되니까 돈 주는거다" 이랬다는거예요. 아니, 이게 보험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거잖아요. 보험금 주는거 가지고 마치 자기 돈으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안그래도 큰 상처를 받은 유족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게... 죽음에 대한 예의도 없고.

김예찬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보호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번에 사업하면서 아,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도 관리 안하나 싶은 일이 많았어요.

김미숙 | 피해자들의 필요에 대한 고민,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이런게 없어요. 다들 자식이나 친척이 좋은 자리에서만 일하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거예요.

회사도 그래요. 사고가 난 시신을 들 것으로 운반하는게 맞잖아요. 근데 처음에 회사 상부에서 마대자루에 시신을 담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건 정말 안되겠다, 해서 나중에 119 구급대가 와서 들 것으로 시신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SPC도 사고 나니까 옆에 그냥 천을 씌우고 일 시키려고 하고. 정말 용균이 때하고 너무 하나도 달라진게 없어요.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태원 사고 때 똑같은 결과를 보듯이... 용균이 이후에 산안법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들면서 뭔가 달라졌나 했는데 여전히 많이 죽고 있어요.

김예찬 |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좀 달라진건 있지 않을까요?

김미숙 | 지금 기업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게, 사망사고가 나면 유족들이 원하는 금액을

그냥 빨리 받아 안고 처리하려고 해요. 유족들도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고. 민사 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하고, 형사는 합의를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족이 합의를 한다는게 무슨 용서를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에 가면 합의를 했으니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걸 감안해서 처벌을 좀 감경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거죠.

김예찬 | 그러게요. 보상을 받는건 유족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처벌 줄이는데 반영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김미숙 | 계속 기업들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태원 참사 때도 정부에서 바로 위로금 얘기를 꺼내서 되게... 이건 유족들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제 자식 죽었는데 누가 돈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고조사 부터 해야하는 일이고,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돈 얘기 꺼내는게...

##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김예찬 | 그래도 요새 언론에서는 많이 중대재해를 다루고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김미숙 | 네, 예전에는 뉴스에 한 줄로 나오고 말았던게, 구의역 사건이나 용균이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저도 언론보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용균이의 죽음도 충격이지만... 그 이전부터 산업재해로 이렇게나 많이 죽었다는 것에 너무 충격 받았어요.

또 요새 언론 뿐 아니라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 같은 대중문화에서도 노동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산업재해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역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예찬 | 네, 산업재해에 대한 자료들이 더 많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창작자들도 많이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미숙 | 그럼요. 직장갑질119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조사해서 계속 발표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받아서 기사를 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조사를 안하니까 직장갑질에서 정리한 내용을 정부가 받아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웃기는 일인데.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걸 정부가 받아서 내고...

김예찬 | 저희도 이제 5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 자료 정리한걸 웹사이트 공개하면서 함께 공유할거거든요. 시민들이 어떤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야 한다 하고.

김미숙 | 시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제가 봤을 때 길 가다가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면, 거기서 사진을 찍는 시늉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오다보니까 영등포역 밖에 큰 사다리 놓고, 관리자들은 서로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이 올라가서 똑딱 거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관리자들이 이걸 보고 미끄럼 방지하는 걸 설치를 하더라구요.

김예찬 | 시민들 하나하나가 산업안전의 감시자가 되자는 거네요.

김미숙 | 네,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



##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

---

제작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지원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편집 / 디자인 : 보임디자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주소 : 04057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8, 3층

전화 : 02-2039-8361

이메일 : [cfoi@opengirok.or.kr](mailto:cfoi@opengirok.or.kr)

홈페이지 : [opengirok.or.kr/nosanjae.kr](http://opengirok.or.kr/nosanjae.kr)